

[Version: 2019.04.25]

SOGANG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FOR
MARKET ECONOMY**

RIME
No.2019-01

**Labor Productivity, Wage, Labor Share
and Household Income in Korea**

By Jungoo Park

Working Paper List

2019

1. Labor Productivity, Wage, Labor Share, and Household Income in Korea
By Jungsoo Park

2018

1. Unbiased Estimation of Competitive Balance in Sports Leagues with Unbalanced Schedules
By Young Hoon Lee & Yongdai Kim & Sara Kim

2017

1. Representation and Social Regret in Risk-Taking
by Doruk İriş
2. Estimation of Within-Season Competitive Balance Using STATA
by Hayley Jang & Young Hoon Lee

2016

1. Delegation and Public Pressure in a Threshold Public Goods Game: Theory and Experimental Evidence
by Doruk İriş & Jungmin Lee & Alessandro Tavoni
2. Economic Targets and Loss-Aversion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by Doruk İriş
3. Tipping Points and Loss Aversion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by Doruk İriş & Alessandro Tavoni
4. Common Factors in Major League Baseball Game Attendance
by Young Hoon Lee
5. Housing market volatility connectedness among G7 countries
by Han Shik Lee & Woo Suk Lee
6. An Analysis of Employment Dynamics in Korea: The Role of Temporary Work and Self-Employment
by Taehyun Ahn
7. Optimal Autoregressive Predictions
by In Choi and Sun Ho Hwang
8. Entrepreneurship and Income Distribution Dynamics: Why Are Top Income Earners Unaffected by Business Cycles?
by Noh-Sun Kwark and Eunseong Ma
9. A Multilevel Factor Model: Identification, Asymptotic Theory and Applications
by In Choi, Dukpa Kim, Yun Jung Kim, and Noh-Sun Kwark
10. Cross-sectional maximum likelihood and bias-corrected pooled least squares estimators for dynamic panels with short T
by In Choi
11. A Bias-Corrected Estimator of Competitive Balance in Sports Leagues
by Young Hoon Lee, Yongdai Kim, and Sara Kim
12.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of Autoregressive Models with a Near Unit Root and Cauchy Errors
by Jungjun Choi and In Choi
13. Mental Health Cost of Terrorism: Study of The Charlie Hebdo Attack in Paris
by Young-Il Kim and Dongyoung Kim

2015

1. Does Bank Branch Competition Alleviate Household Credit Constraints? Evidence from Korean Household Data

[Version: 2019.04.25]

by Saeyeon Oh, Jungsoo Park

2014

1. Outcome Uncertainty, Governance Structure, and Attendance: A study of the Korean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by Young Hoon Lee, Hayley Jang
2. Major League Baseball Attendance: Long-term Analysis Using Factor Models
by Young Hoon Lee, Seung C. Ahn
3. Stochastic Frontier Models Using GAUSS
by Young Hoon Lee
4. Unit root tests for dependent and heterogeneous micropanels
by In. Choi
5. Locus of Control and Job Turnover
by Taehyun Ahn
6. Innovative Activities of an Incumbent and a Potential Entrant: An Empirical Exploration of the Role of Uncertainty in Product and Process Innovations
by Hyunbae Chun

2013

1. Panel Cointegration by In Choi
2. Model Selection for Factor Analysis:
Some New Criteria and Performance Comparisons by In Choi
3. Does Specialization Matter for Trade Imbalance at Industry Level?
by E. Young Song
4. Comparison of Stochastic Frontier Effect Models: Monte Carlo Simulation
by Young Hoon Lee, Jinseok Shin
5. Changes in Habitual Attendance at Korean Baseball Games
by Young Hoon Lee, Hayley Jang

2012

1. Vertical and Horizontal Education-Job Mismatches in the Korean Youth Labor Market: A Quantile Regression Approach
by Hong-Kyun Kim, Seung C. Ahn, Jihye Kim
2. Forecasting Korean Inflation
by In Choi, Seung Jin Hwang
3. Leading Behavior of Interest Rate Term Spreads and Credit Risk Spreads in Korea
by Won-Gi Kim, Noh-Sun Kwark

2011

4. Efficiency Comparison of International Golfers in the LPGA
by Young Hoon Lee
5. Competitive Balance: Time Series Lessons from the English Premier League
by Young Hoon Lee & Rodney Fort
6. Efficient Estimation of Nonstationary Factor Models
by In Choi
7. The Employment Dynamics of Less Educated Men in the United States:
The Role of Self-Employment
by Taehyun Ahn

[Version: 2019.04.25]

8. Who Goes Where and How? Firm Heterogeneity in the Choice of FDI Type and Location
by Hea-Jung Hyun & Jung Hur [Version: 2014.03.05]
9. Trade Openness and Vertical Structure: Evidence from Korean Firm-Level Data
by Hea-Jung Hyun & Jung Hur
10. Refundability and Price: Empirical Analysis on the Airline Industry
by Seongman Moon & Makoto Watanabe
11. Tests for m-dependence Based on Sample Splitting Methods
by Seongman Moon & Carlos Velasco
12. Do Foreign Excess Return Regressions Convey Valid Information?
by Seongman Moon & Carlos Velasco
13. Malaria: An Early Indicator of Later Disease and Work Level
by Sok Chul Hong
14. On the Properties of Regression Tests of Asset Return Predictability
by Seongman Moon & Carlos Velasco
15. The Forward Discount Puzzle: Identification of Economic Assumptions
by Seongman Moon & Carlos Velasco
16. Larger groups may alleviate collective action problems
by Sung-Ha Hwang
17. Is Altruism Bad for Cooperation?
by Sung-Ha Hwang & Samuel Bowles
18. Equilibrium Selection with Payoff-Dependent Mistakes
by Kang-Oh Yi
19. Decompositions of two player games: potential, zero-sum, and stable games
by Sung-Ha Hwang & Luc Rey-Bellet
20. Technology of military conflict, military spending, and war
by Sung-Ha Hwang
21. A note on optimal incentives with state-dependent preferences
by Sung-Ha Hwang & Samuel Bowles

2010

1. Happiness and Physical Activity in Special Populations: Evidence from Korean Survey Data
by Young Hoon Lee & Ilhyeok Park
2. Spurious Fixed Effects Regression by In Choi
3. Employment Dynamics of Married Women and the Role of Part-Time Work: Evidence from Korea
by Taehyun Ahn
4. Deterministic Equations for Stochastic Spatial Evolutionary Games
by Sung-Ha Hwang & Luc Rey-Bellet & Markos Katsoulakis

2009

1. The Impact of Postseason Restructuring on the Competitive Balance and Fan Demand in Major League Baseball
by Young Hoon Lee
2. Estimation of Temporal Variations in Fan Loyalty: Application of Multi-Factor Models
by Young Hoon Lee

2008

1. Model Selection Criteria for the Leads-and-Lags Cointegrating Regression
by In Choi & Eiji Kurozumi

[Version: 2019.04.25]

2007

1. Efficient Estimation of Factor Models
by In Choi

Labor Productivity, Wage, Labor Share, and Household Income in Korea

Jungsoo Park*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comparison of labor productivity growth, wage growth, changes in labor share and in household income in Korea for the 2000-2017 period. The findings show that contrary to the concerns raised in the recent literature that wages are lagging behind growths in GDP per employment, actually wage growth and GDP per employment growth for the Korean economy were very similar for the corresponding period either in nominal terms or real terms using the same price index. Furthermore, the firm-level and establishment-level micro data show that wage growth is surpassing the productivity growth, especiall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for the small-and-medium-sized enterprises. Declining household income share is mainly due to expanding government sector and reduction in the self-employment shares. Lastly, there are many unresolved issues in calculating adjusted labor income share and room for improvement in long-term time series of labor income shares. These findings imply that recent government policies to promote rapid wage increases based on incorrect facts should be reconsidered.

Key words: labor productivity, wage, price index

JEL codes: E24, E25

* Professor, School of Economics, Sogang University (Tel. 02-705-8697, E-mail: jspark@sogang.ac.kr)

한국의 노동생산성, 임금, 노동소득분배율, 그리고 가계소득

박정수*

논문초록

본 연구는 사업체 및 기업체 원시자료와 국민계정자료를 분석하여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국내외문헌들이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취업자당 실질GDP와 실질임금을 비교할 때 실질화 방식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아 임금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해석상의 오류가 초래되었고 이를 교정한 결과 2000-2017년 기간 중 취업자당 실질GDP증가율과 실질임금증가율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업체 및 기업체 원시자료에서는 오히려 임금상승률이 더 높아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가계소득비중 감소의 원인은 정부부문의 확대와 자영업자비중의 감소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측정상 여러 쟁점이 남아 있어 장기시계열 추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임금 없는 성장’이라는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여 취해진 기존 정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핵심 주제어: 노동생산성, 임금, 노동소득분배율, 가계소득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E24, E25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Tel. 02-705-8697, E-mail: jspark@sogang.ac.kr)

I. 서론

금융위기 이후 임금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우리경제의 성장은 지속되는데 반하여 실질임금은 상승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일부 국내외 문헌들과 언론 등을 통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²⁾ 특히 박종규(2013, 2014), 장하성(2015), 김유선(2018), Dabla-Norris et al.(2015) 등의 문헌에서는 2007년 이전까지는 경제성장과 임금이 함께 증가한 반면 2007년 이후 기간에는 경제성장이 지속되었지만 임금은 정체되고 있다는 주장을 실질임금과 취업자당 실질GDP 통계자료 비교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해당 문헌들은 이를 근거로 경제성장과 임금 간 괴리가 발생한 이유가 경제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중 임금에 배분되는 부분이 작아지는 데 있다고 추론하고 이를 다시 낮은 노동소득 증가율 또는 가계소득 증가율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최근 정부정책이 임금 및 가계소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주요 정책수단의 하나로 임금인상에 역점을 두는 것도 이러한 통계적 근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한편 이와 같은 거시 총량지표 간 비교결과와는 달리 제조 사업체 원시자료에 기반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 괴리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³⁾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여 국민계정의 거시자료, 한국경제의 사업체 및 기업체 미시원시자료 등 한국경제를 묘사하는 모든 이용가능한 포괄적 범위의 통계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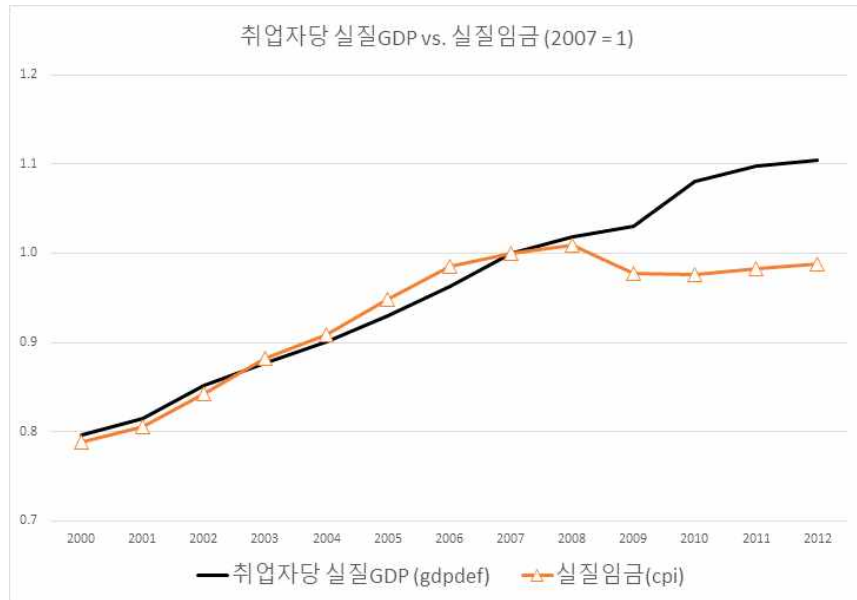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 괴리를 처음 지적한 대표적인 문헌은 박종규(2013)의 보고서다. 해당 보고서는 성장은 지속되는데 고용증가가 낮다는 의미에서 ‘고용 없는 성장’에 더하여 성장의 과실이 임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임금 없는 성장’을 주장하여 학계와 언론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주장의 실증적 근거로서 외환위기 이후 실질임금성장률과 취업자 1인당 실질GDP성장률을 비교하였다. <그림1>은 해당 보고서의 그림을 복원하여 제시한 것으로 실질임금과 취업자당 실질GDP 각각을 2007년을 기준으로 지수화하여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7년 이전에는 두 변수가 유사한 속도로 증가했지만 2007년 이후기간에는 임금증가율과 취업자 1인당 GDP증가율 간에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

2) 박종규(2013, 2014), 홍장표(2015), 장하성(2015), 김유선(2018), Dabla-Norris et al.(2015), ILO(2018) 및 2014년 다수의 언론기사 등에서 이러한 주장들을 찾아볼 수 있다.

3) 한국생산성본부(2013)의 p.66에 제시된 노동생산성과 1인당 임금의 연별 자료를 참고하였다.

을 확인할 수 있다.⁴⁾

<그림1> 취업자당 실질GDP와 실질임금의 추이 (2007=1)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기초로 박종규(2013)의 p.32 <그림 20>을 동일한 출처의 자료를 토대로 복원함.

노동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로서 몇몇 문헌에서는 국민계정에서 자영업 영업잉여를 제외한 국민소득 중에서 피용자보수의 비중을 나타내는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이 1990대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을 지적한다.⁵⁾ 더 나아가 노동소득 증가율 둔화가 곧 가계소득 비중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추론하고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하는 원인이 기업소득 비중 증가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⁶⁾

한편 제조사업체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수록한 한국생산성본부(2013)의 노동생산성 및 1인당 임금자료를 보면 2000-2012년 기간 동안 제조 사업체의 명목노동생산성은 연평균 6.04% 증가했고 종사자당 명목임금은 연평균 6.02%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즉,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 차이는 거의 없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문헌들의 연구결과와 대비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업체, 기업체 및 국민계정 자료를 기초로 2000년대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4) 장하성(2015), 김유선(2018), Dabla-Norris et al.(2015)에서도 유사한 그림을 찾아볼 수 있다.

5) 주상영-전수민(2014)와 이병희(2015) 등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6) 홍장표(2015)와 장하성(2015) 등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한다. 첫째, 취업자당 실질GDP와 실질임금 비교시 실질화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관련된 해석상의 오류를 바로잡아 새로운 비교분석을 제시한다. 둘째, 법인기업 전수조사자료인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하여 부가가치 중 인건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본다. 셋째,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의 10인 이상 전수조사 사업체 원시자료인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를 이용하여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을 비교한다. 넷째,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의 한계와 개선점을 제시하고 새로운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을 도출하여 기존 조정분배율의 변화추이와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가계소득 비중 하락의 원인을 세부구성요소의 변화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본 연구가 확인한 실증적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임금과 취업자당 실질GDP 비교시 실질화방식의 문제점을 제거하면 두 변수의 증가율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⁷⁾ 둘째, 2000년 이후 제조업 사업체 및 전 산업 기업체 자료분석에서는 오히려 명목임금증가율이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이 간과하고 있는 요소들을 감안하면 재조정분배율 추이에 유의미한 변화가 초래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추가적인 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가 2010년 이후 기간에만 존재하여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추정은 가능하지 않다. 넷째,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의 주원인은 정부부문의 확대와 자영업부문 비중 감소에 기인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자영업부문 비중 감소는 기업형태가 법인기업으로 대체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와 대비되며 임금증가율이 노동생산성증가율 보다 낮지 않고 유사하거나 오히려 높다는 실증적 근거를 미시 및 거시자료를 기초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경제 차원에서 실질임금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기업부문이 자본생산성보다 더 큰 이익을 취해서가 아니라 취업자당 GDP증가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만약 기존문헌에 따라 잘못된 인식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책이 있다면 재검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분석에 이용한 주요 자료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미시 및 거시 자료를 기반으로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을 계산하여 비교 제시한다. 관련된 이슈로서 4장에서는 조정노동소득분배율 측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법을 짚어보고 그에 따라 신규조정노동소득분배율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가계소득 비중의 원인을 세부구성요소의

7) Bosworth, Perry, and Shapiro (1994)는 1979-1993년 기간 중 미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간 괴리를 논하면서 동일한 지적을 한 바 있다.

변화를 추적하여 파악해 본다. 마지막 6장에서는 결론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II. 자료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된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 및 노동생산성에 관한 산업별 자료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하였다. 고용 및 임금과 관련된 자료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이용하였다. 이들 자료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의 포괄성과 대표성이 높은 표본조사들이어서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고용 및 임금 등의 주요 변수들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중 중 가장 신뢰성이 높은 기초자료들로 볼 수 있다. 각 기초자료에 대한 특징과 주요 변수들은 <표1>에 제시하였다.

<표1> 주요 기초자료의 특성

범주	통계명	출처	주요 변수	조사대상 범위
부가가치 및 생산성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부가가치, 인건비, 종사자수 등	- 제조업 - 10인 이상 사업체 전수조사 - 법인, 개인 포함
	국민계정	한국은행	부가가치, 소득지표 등	- 국민경제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산업별 기업 재무제표	- 전산업 - 국세청 신고 기업 자료 - 2008년 이전: 표본조사, 법인 - 2009년 이후: 전수조사, 법인 (+ 큰 규모 개인사업체)
고용 및 임금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종사자지위별 고용 등	- 전산업 - 전국 3.5만 가구 표본조사 -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임금	- 전산업 - 1인 이상 3.2만사업체, 근로자 80만명 - 임금근로자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임금	- 전산업 -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산업의 종사자 1인 이상 2.8만개 표본사업체 - 임금근로자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주요변수들을 도출할 때에는 가능한 한 동일한

기초자료 안에 있는 변수들을 사용하려고 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다른 기초자료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일부 연구들에서 조사범위가 다르고 특성이 다른 기초자료들에서 필요한 변수들을 선택하여 주요 변수를 도출하거나 비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측정상 오류가 발생하여 왜곡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지표 비교와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III. 노동생산성과 임금에 대한 비교분석

1. 노동생산성과 임금 간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다. 경쟁적 노동시장을 가정할 때 노동시장의 균형은 식(1)과 같이 실질임금(w)이 노동의 한계생산(MPL)과 일치할 때 달성된다. 여기서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가 아니라 생산물물가로 나누어 계산됨에 유의해야 한다. Y 를 실질부가가치를 의미하는 산출 그리고 L 을 노동이라고 하자. 이때 노동의 평균생산(Y/L)을 노동생산성으로 정의하고 식(1)의 양변을 노동생산성으로 나누면 식(2)와 같이 좌변은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임금이 되고 우변은 노동의 산출탄력성($\epsilon = MPL * L / Y$)으로 표현된다. 이때 좌변은 노동소득분배율($=wL/Y$)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w = MPL \quad (1)$$

$$w/(Y/L) = \epsilon \quad (2)$$

이처럼 노동시장의 균형조건에 의하면 생산기술을 반영하는 노동의 산출탄력성에 따라서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임금 비율 또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정해진다. 노동의 산출탄력성이 변하지 않으면 노동생산성과 임금은 같은 비율로 변화할 것이며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은 일정할 것이다. 이 때 단기적으로 두 변수의 증가율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단기적인 충격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장기적으로 두 변수의 증가율에 괴리가 발생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이 변하는 경우는 생산의 기술적 또는 구조적 변화로 인해 노동의 산출탄력성이 변화했을 가능성과 균형조건에서 벗어나 비효율성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상존한다.⁸⁾ 따라서 장기적으로 두

8) 남성일(1991)에서는 임금증가율과 노동생산성을 비교할 때 장기적으로 노동의 산출탄력성은 변화한다

변수의 증가율이 다르게 움직인다면 보다 근본적으로 생산기술의 변화 또는 산업분포의 변화가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경제의 비효율성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한다.⁹⁾

노동시장이 경쟁적이지 않거나 다른 제약이 원인이 되어 식(2)의 좌변과 우변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 괴리의 정도가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노동시간 균형조건에서 볼 수 있는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무수한 제약과 비경쟁적 조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과 보고서들에서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을 비교해 온 것은 이러한 분석과 이해에 근거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2. 경제성장과 임금: 국민계정 자료분석

‘임금없는 성장’을 주장한 기존 문헌들은 경제전체 평균 실질임금과 취업자당 실질GDP를 단순히 비교하여 추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특성과 포괄 범위가 매우 다른 두 지표를 직접 비교하고 직관적인 해석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왜곡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지표는 다른 범위에 대한 평균지표이므로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임금통계는 임금근로자의 평균적인 근로소득만을 측정하는 반면 경제전체의 GDP는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모두 포함하므로 비임금근로자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어 범위가 상당히 다르다.¹⁰⁾ 한국경제는 자영업 부문에 종사하는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2018년 기준 25.4%에 달하는 등 상당히 큰 편이고 시계열적으로 감소추이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위가 다른 두 지표의 시계열을 단순비교하여 직관적인 해석을 내리는 것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둘째, 국민계정상의 GDP는 법인기업, 자영업, 정부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포함하고 있고 각 부문별 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가 상당히 다를 뿐 아니라 부문별 비중이 시간에 따라 유의하게 변화하고 있다. 총량지표 간 비교는 이러한 부문간 차이와 비중 변화를

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9) Park(2007)에서는 CES생산함수의 경우 평균노동생산성 증가율과 한계노동생산성 증가율 간에 괴리가 생기고 노동의 산출탄력성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1963-2000년 한국경제 자료를 기초로 CES생산함수를 추정하여 한계생산성과 임금간 괴리가 유의하지 않음을 보인바 있다.

10) 대표적인 임금조사 자료인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임금구조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모두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볼 수 없으므로 잘못된 해석을 도출할 위험성이 있다. 셋째, 임금지표로 일반적으로 월임금총액이 사용되는데 이는 인건비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생산성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인건비가 더 적절하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금통계에서는 이러한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임금과 노동생산성을 비교하고자 한다면 포괄범위가 다른 두 개의 총량지표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분석에서와 같이 동일한 통계자료 내에 노동생산성과 인건비 변수가 동시에 제공되는 사업체단위 또는 기업체단위 원시자료를 기초로 비교해야 신뢰성이 높고 보다 명확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내외 문헌에서는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총량적 지표간 관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실질임금과 실질GDP 간 비교를 제시해 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연구들에서 비교방법과 해석상에 심각한 오류가 있고 그로 인해 중요한 왜곡이 초래되었다는 점이다.¹¹⁾ 그리고 비교방법상의 오류를 교정하면 기존 주장들과는 상당히 다른 결론에 이른다는 점이다. 다음 세부 절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제시하였다.

(1) 취업자당 GDP 성장률과 임금: 한국

한국경제의 경제성장률과 임금증가율을 비교한 연구들 중에서 두 변수간의 심각한 괴리를 처음 지적한 문헌은 박종규(2013, 2014)의 연구보고서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그림1>에서 보았듯이 2007년 이후 실질임금증가율이 취업자당 실질GDP성장률보다 낮아 ‘임금 없는 성장’이 확인되었음을 주장하였다.¹²⁾ 여기서 실질임금과 실질GDP를 비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두 변수 간 추이의 차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성장은 지속되는데 그 중 임금에 배분되는 부분이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성급하게 추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물론 실질임금증가율과 실질GDP증가율 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소득이 임금에 배분되는 비중이 적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은 임금비중의 변화는 없지만 두 변수를 실질화할 때 두 개의 다른 물가지수를 사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질임금을 도출할 때는 구매력기준에서 평가하므로 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실질화하고 실질GDP를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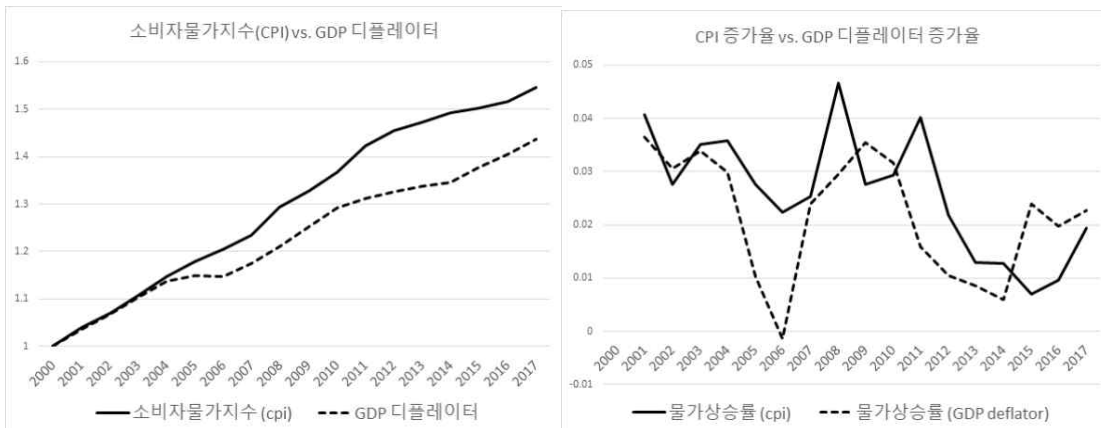
11) Dabla-Norris et al.(2015) p.14, ILO(2018) p.4, 김유선(2015) p.27, 장하성(2015), 박종규(2013, 2014) p.32 등 국내외 문헌 대부분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실질화를 하였고 그로 인해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12) 연구보고서에는 ‘취업자당 실질GDP성장률’을 ‘실질노동생산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할 때는 생산물단위 관점에서 평가하므로 명목GDP를 산출물가지수인 GDP디플레이터 물가지수로 실질화한다. 그러므로 실질임금과 실질GDP의 변화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다른 기준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점을 감안하여 해석해야 한다. 더군다나 두 물가지수의 변화추이가 크게 다르다면 기존문헌의 추론이 틀릴 가능성이 커진다.

<그림2>은 소비자물가지수와 GDP디플레이터의 기준을 2000년으로 하고 두 지수의 추이와 각각의 물가상승률을 보여 주고 있다. 2000-2017년 기간 동안 두 물가지수의 변화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누적 54.6% 증가한 반면 GDP디플레이터 증가율은 43.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볼 때 소비자물가지수 물가상승률에 비해 GDP디플레이터 물가상승률이 유의하게 낮고 두 물가상승률이 큰 차이를 보이며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¹³⁾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문헌의 방식대로 취업자당 명목GDP를 GDP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하고 임금을 CPI로 실질화하면 매년 발생하는 국민소득 전부를 모두 임금으로 배분한다고 해도 실질임금이 취업자당 실질GDP에 비해 10.9%p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착시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경제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임금으로 배분해도 실질화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적게 배분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림2> 물가지수 (2000년=1)와 물가상승률: CPI와 GDP디플레이터 기준



출처: 한국은행 ECOS, 저자계산

비교분석의 목적이 국민들이 생산하여 창출한 소득과 그 중에서 임금으로 배분되는 부분을 비교하고자 한다면 GDP를 국민생산이 아니라 국민소득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이 비교를 통해 ‘임금 없는 성장’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국민이 기여한 국가경제의 소득은 증가했지만 임

13) 두 물가상승률 지표간 상관계수는 이 기간 동안 0.489에 불과하다.

금은 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변수를 소득개념으로 보고 그 추이를 비교하고자 한다면 명목기준으로 명목임금과 취업자 1인당 명목GDP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두 변수 모두 동일한 물가지수 기준으로 실질화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1994년 미국에서도 1979~1993년 기간에 대해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간 괴리현상이 논란거리가 되었으며 당시 브루킹스연구소의 Bosworth, Perry, and Shapiro(1994)가 본 연구와 동일한 지적을 하며 괴리현상이 착시이며 동일한 산출물가지수로 실질화해서 비교하면 괴리가 사라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존 문헌의 실질화방식이 해석상 심각한 오류를 초래하는 것은 다음 그림들에서 관찰할 수 있다. <그림3>의 A는 2000-2017년 기간에 대해서 기존 연구 방법론과 동일하게 실질화한 실질임금과 취업자당 실질GDP를 2000년을 기준으로 지수화하여 제시하였고 이는 앞서 서론에서 본 <그림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¹⁴⁾ 동 기간 실질임금의 누적증가율은 35.6%(연평균 1.8%)인 반면 취업자당 실질GDP의 누적증가율은 50.2%(연평균 2.4%)다. 이처럼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과 임금증가율 간 큰 괴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그림3>의 B에서는 명목임금과 취업자당 명목GDP를 2000년을 기준으로 지수화하여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평균 명목임금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임금구조조사의 월임금총액 등 세 가지 자료에 근거하여 도출하여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00-2017년 기간동안 이들 임금지표들과 취업자당 명목GDP성장률 간 추이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며 기존 문헌의 결과와 대비된다.¹⁵⁾ 동 기간 임금구조기본조사 기준 명목임금의 누적증가율은 109.7%(연평균 4.5%)이고 취업자당 명목GDP의 누적증가율은 115.8%(연평균 4.6%)다. 기존 문헌의 결과와는 달리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과 임금증가율 간의 유의미한 괴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증가율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3>의 C에서는 취업자당 GDP와 임금 모두를 동일하게 CPI기준으로 실질화하였고 D에서는 모두를 동일하게 GDP디플레이터기준으로 실질화하여 실질화기준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부분을 제거했다. 그 결과 역시 두 변수의 증가율 간에 유의미한 괴리는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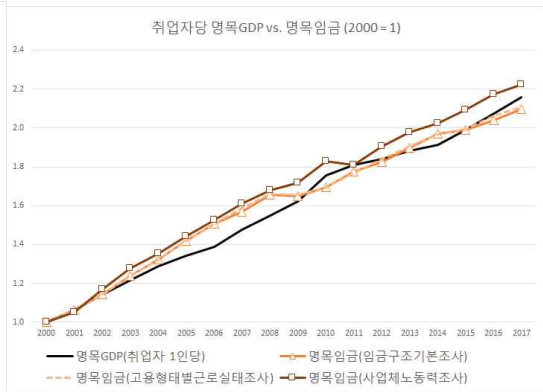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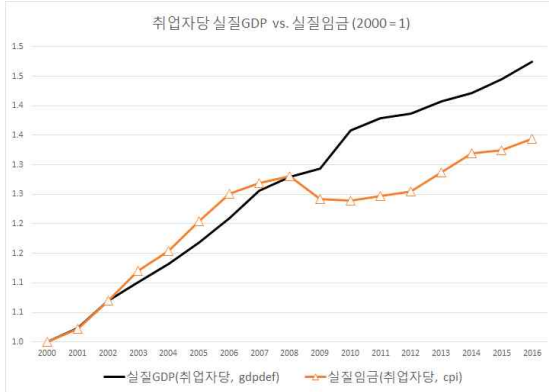
14) 기존 연구에서는 2007년 전후의 차이를 부각하기 위해 2007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지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2000년 이후 기간전체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2000년을 기준연도로 삼았다. 2000~2017년 기간에 대해서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두 방식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해를 기준연도를 삼느냐는 시각적인 차이만 있지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

15) 2000년~2017년 기간동안 일관성 있는 임금시계열로는 임금구조기본조사의 5인 이상 상용근로자, 그리고 사업체노동력조사의 5인 이상 상용근로자 월임금총액이 제공되고 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임금시계열의 경우 2006년까지는 임금구조기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그 이후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1인 이상 전체 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을 이용하였다.

<그림3> 취업자당 GDP와 임금: 실질지수와 명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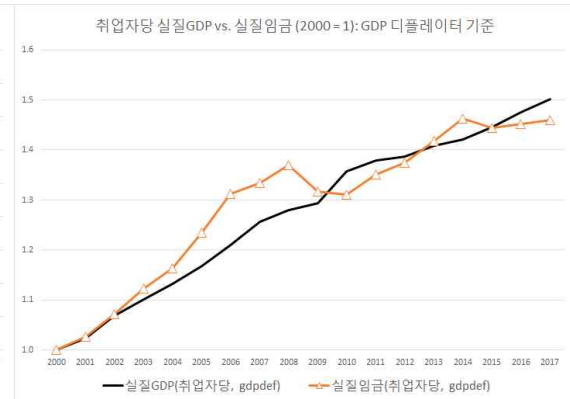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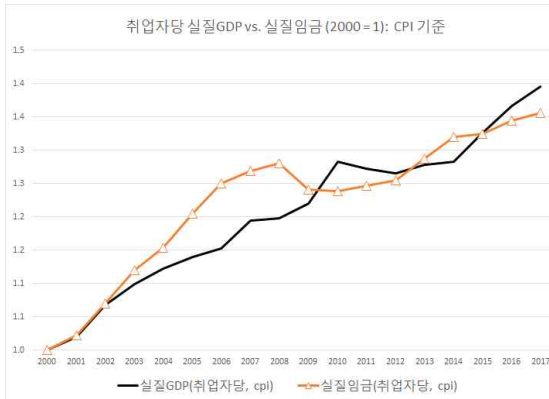
A: 실질변수간 비교

B: 명목변수간 비교



C: CPI로 실질화

D: GDP디플레이터로 실질화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임금구조조사 각 연도, 저자계산.

주: 임금의 경우 임금구조기본조사는 5인 이상 상용근로자, 그리고 사업체노동력조사는 5인 이상 상용근로자 월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함.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임금시계열의 경우 2006년까지는 임금구조기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그 이후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1인 이상 전체 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을 이용함.

<표2>는 임금과 취업자당 GDP의 5년 단위 기간별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2002~2007년 기간동안 실질임금은 누적으로 18.6%, 취업자당 실질GDP은 누적으로 17.4% 증가하였고 2007~2012년 기간에는 실질임금은 누적으로 -1.2%, 취업자당 실질GDP1은 누적으로 10.4% 증가했다.¹⁶⁾ 즉, 기존 문헌의 주장과 같이 2007년 이전과는 달리 2007~2012년 기간에 두 변수 간에 큰 괴리

16) 본 연구가 박종규(2014)의 수치가 미세하게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기존 연구가 분기별 자료를 사용한 반면 본 연구는 연도별 수치를 사용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명목기준 비교는 다르다. 2002~2007 기간에는 명목임금의 누적증가율이 37.1%이고 취업자당 명목GDP의 누적증가율은 29.2%이어서 이 기간 중 임금증가율은 성장률을 초과하였다. 2007~2012년 기간에는 반대로 명목임금의 누적증가율이 16.3%이었고 취업자당 명목GDP의 누적증가율은 24.7%이어서 임금증가율이 성장률에 못 미쳤다. 두 기간을 합한 2002~2012년 기간을 보면 명목임금은 누적으로 82.4% 그리고 취업자당 GDP증가율은 누적으로 84.0% 증가하여 명목임금과 취업자당 명목GDP는 매우 유사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2> 임금상승률 vs 취업자당 GDP증가율

지표	기간별 누적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2002- 2007	2007- 2012	2012- 2017	2002- 2012	2000- 2017	2000- 2017
실질임금상승률	18.6%	-1.2%	8.2%	25.5%	35.6%	1.8%
취업자당 실질GDP증가율	17.4%	10.4%	8.3%	38.7%	50.2%	2.4%
명목임금상승률	37.1%	16.3%	15.4%	82.4%	109.7%	4.5%
취업자당 명목GDP증가율	29.2%	24.7%	17.6%	84.0%	115.8%	4.6%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저자계산

주1) 임금은 일관된 시계열 확보가 가능한 임금구조기본조사 5인 이상 상용근로자 월임금총액을 사용하였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2006년 이후 1인 이상 전체근로자에 대한 월임금총액을 제공하고 있어 2006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 위 실질임금과 비교한 결과 추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주2) 실질임금상승률은 CPI를 기준으로, 취업자당 실질GDP 증가율은 GDP디플레이터를 기준으로 각각 실질화하였음.

결론적으로 기존 국내외 문헌들은 비교목적상 적절하지 않은 실질변수 비교로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였으며 그 결과 경제성장률과 임금증가율 간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괴리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¹⁷⁾

(2) 취업자당 GDP 성장률과 임금: OECD국가간 비교와 미국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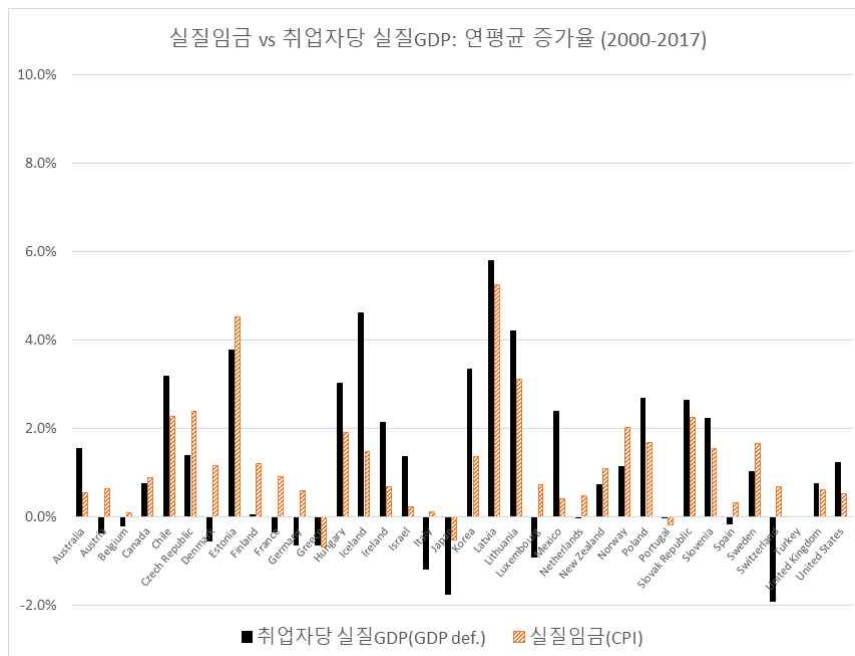
경제성장률과 임금 비교시 실질화방식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아 잘못된 해석을 제시한 것은 국내문헌 뿐만은 아니다. ILO(2018) 보고서에서는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2010-2016 기간 실질임금증가율과 취업자당 실질GDP증가율을

17) Dabla-Norris et al.(2015) p.14, ILO(2018) p.4, 김유선(2015) p.27, 장하성(2015), 박종규(2013, 2014) p.32 등 국내외 문헌 대부분에서 두 변수의 실질화를 각각 GDP디플레이터와 CPI로 하였고 그로 인해 해석상 오류를 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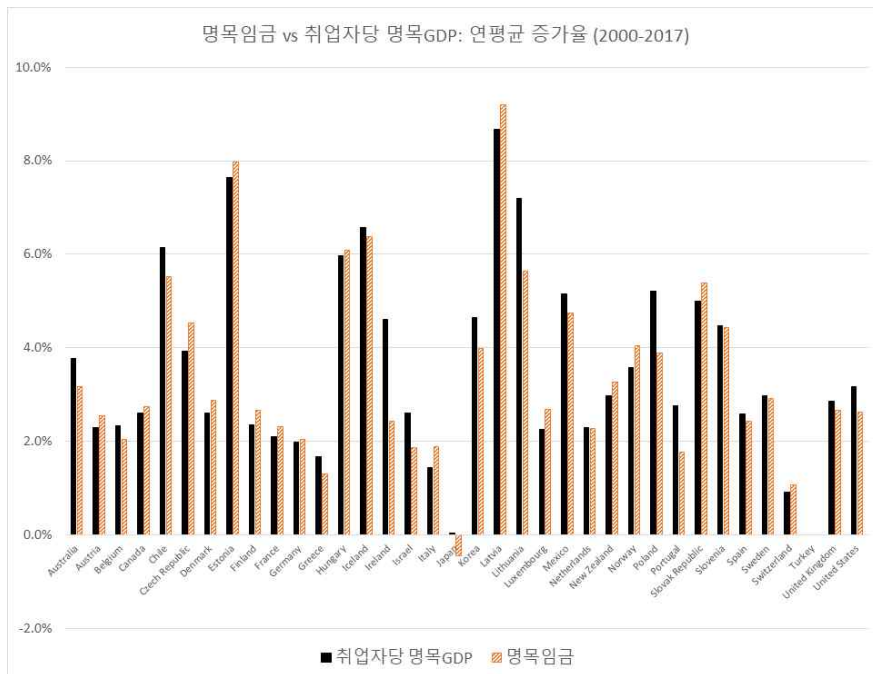
비교하고 그 중 한국의 경우 실질임금증가율이 취업자당 실질GDP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어 경제의 성과가 노동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Dabla-Norris et al.(2015)의 IMF Staff Note에서는 2005년 이후 한국을 포함한 독일, 일본, 미국, 스페인, 영국 등 12개 주요국들의 실질임금지수와 취업자당 실질GDP지수 간 유의미한 괴리가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기초로 노동소득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분석결과들 역시 앞 절에서 지적한 논의에 의하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림4>의 A에서는 2000-2017년 기간 35개 OECD 국가들에 대해서 연평균 실질임금상승률과 취업자당 연평균 실질GDP성장률을 비교하였다. 이 경우 한국 뿐만 아니라 여러 OECD국가에서도 두 변수 간 상당한 괴리가 나타난다. 하지만 명목기준으로 비교한 B의 경우에는 A와는 달리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임금상승률과 취업자당 GDP성장률 간 차이가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4> 경제성장률 vs. 임금상승률: OECD 국가간 비교, 연평균
A: 실질변수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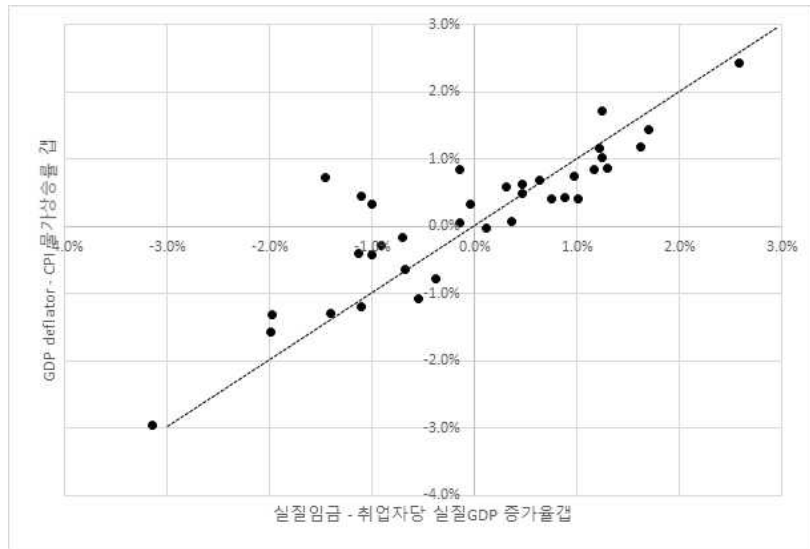
B: 명목변수간 비교



자료: OECD EUROSTAT, ILO, 저자계산.

<그림5> 은 2000-2017 기간동안 각 35개 OECD 국가에서 연평균 실질임금증가율과 실질경제성장률 간의 차이와 GDP디플레이터 및 CPI 기준 물가상승률간의 차이에 대한 산포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실질임금증가율과 실질경제성장률 간 괴리” 는 “두 물가지수의 물가상승률간 괴리” 로 대부분 설명이 가능하며 두 괴리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 (0.867)가 존재한다.

<그림5> 실질임금증가율과 실질경제성장률 간 괴리 vs. 물가상승률간 괴리 : OECD국가, 2000-2017



자료: OECD EUROSTAT, ILO, 저자계산.

미국의 경우도 1994년경에 1960년 이후 기간 미국의 비농업부문의 실질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추이를 살펴본 바 1979~1993년 기간에 대해 노동 생산성과 실질임금 간 괴리현상을 발견하여 이슈가 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브루킹스연구소의 Bosworth, Perry, and Shapiro(1994)가 본 연구와 동일한 시각에서 이 퍼즐을 분석하였으며 언급된 괴리현상 중 상당한 부분이 실질화시 두 변수에 각각 다른 물가지수를 적용해서 발생하는 착시라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논문에 제시된 <표3>와 같이 생산성과 임금 모두 동일한 산출물가지수(비농GDP디플레이터, NFGDP)로 실질화해서 비교하면 괴리가 사라진다는 점을 보였다.

<표3> 실질임금 및 실질GDP 증가율 비교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

	1960-73	1973-93	1973-83	1983-93
Hourly compensation (CPI)	2.4%	0.4%	0.2%	0.5%
Hourly compensation (NFGDP)	2.5%	0.8%	0.5%	1.0%
Productivity(NFGDP)	2.5%	0.9%	0.6%	1.2%

출처: Bosworth, Perry, and Shapiro (1994) Table 1. CPI는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한 것이고 NFGDP는 산출물가지수 (비농업GDP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한 것임.

(3) 실질임금 상승률 둔화의 원인

한국경제에서 평균 실질임금증가율은 2000년 이후 낮은 편이고 2010년 이

후 더욱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이슈가 되어 가고 있다. 그 원인이 노동생산성과 임금 간 괴리 때문이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4>을 보면 2000년~2010년 기간 실질임금(A)은 연평균 2.2% 증가했으며 그 후 2010~2017년 기간에는 증가율이 연평균 1.3%로 둔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00년~2010년 기간 실질GDP(D)는 연평균 4.4% 증가했으며 2010~2017년 기간증가율은 연평균 3.0%으로 다소 둔화되었다. 두 기간 모두 실질경제성장률(D)은 실질임금증가율(A)을 각각 크게 상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취업자당 실질GDP증가율(C)은 두 기간에 각각 3.1%와 1.4%에 불과하고 GDP를 임금과 비교하기 위해 소득개념으로 간주하여 CPI로 실질화한 실질GDP증가율(B)은 두 기간 각각 2.5%와 1.2%로 낮아지며 같은 기간 실질임금 증가율(A)과 매우 유사하다.

<표4> 실질임금 및 실질GDP 증가율 비교 (연평균 증가율)

	실질임금(취업 자 일인당)	실질GDP(취 업자 일인당, CPI)	실질GDP(취업자 일인당, GDP디플레이터)	실질GDP (GDP디플레이 터)
	A	B	C	D
2000-2010	2.2%	2.5%	3.1%	4.4%
2010-2017	1.3%	1.2%	1.4%	3.0%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결과적으로 실질임금상승률이 매우 낮고 점차 낮아지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빠르게 성장하는 국민소득에 비해 임금이 적게 배분된데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자당 GDP증가율이 낮고 낮아지고 있는데 있다. 여기서 취업자당 GDP증가율은 넓은 의미에서 노동생산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둔화가 진짜 원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임금 없는 성장’ 이 아니라 ‘저성장으로 인한 낮은 임금증가’ 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본다. 그동안 GDP증가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은 원인은 취업자 수 증가에 있고 이러한 취업자 증가요인을 통제하고 나면 취업자당 GDP증가율은 매우 낮아지고 임금증가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3. 노동생산성과 임금: 기업체 자료 분석

본 절에서는 기업체 원시자료를 기초로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변화추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한다. 우리경제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단위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변화추이를 비교하는 것은 이용가능한 통계자료의 한계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조사범위가 비교적 포괄적이고 대표성이 높으며 기업단위 부가가치와 임금 변수가 함께 제공되는 자료로는 통계청 기업활동조사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들 수 있다. 이 중 기업활동조사는 법인 중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이며 자본금 3억원 이상인 기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자료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은 영리법인에 대한 전수조사에 기초하여 기업에 대한 재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¹⁸⁾ 개별 기업자료는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은행 ECOS는 원시 자료에 기초하여 산업별 재무제표와 부가가치 구성 등 다양한 변수들과 가공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경영분석은 국민계정 작성에 참고자료로도 이용되고 있고 법인기업의 재무적 상태에 관한 한 가장 신뢰성이 높은 자료로 볼 수 있다. 다만, 기업별 종사자 수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종사자당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직접 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임금을 종사자당 노동생산성으로 나눈 것이 바로 부가가치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므로 인건비 비중의 변화를 통하여 두 변수 증가율의 상대적 변화를 가늠하고자 한다.¹⁹⁾ 또한 인건비는 임금총액과는 달리 급여, 복리후생비 및 퇴직급여까지 포함하는 등 노동에 대한 댓가로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과 비교하는데 더 부합하는 지표라고 판단된다.

기업경영분석에서는 부가가치와 그 구성항목으로서 인건비, 영업잉여, 금융비용 등의 항목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인건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인건비 비중이 커지면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에 비해 명목임금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이고 반대로 그 비중이 작아지면 명목임금이 더 적게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의 부가가치액은 재무제표상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 및 관리비를 제하고 인건비와 대손상각비를 다시 더한 금액이다. 추정된 부가가치는 다시 영업잉여, 인건비, 금융비용, 조세 및 공과, 감가상각비로 분류된다. 여기서 영업잉여의 개념은 영업손익에 대손상각비를 더하고 금융비용을 차감한 잔액으로 계산된다.²⁰⁾ 한국은행 ECOS가 제공하고 있는 산업별 부가가치의 구성 자료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2002년 이후

18) 기업경영분석 자료는 2008년까지는 표본조사에 의존하였고 2009년 이후는 전수조사 자료다.

19) 기업경영분석에서 인건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항목과 제조원가명세서 중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20) 기업경영분석의 영업잉여는 국민계정의 법인의 영업잉여 및 재산소득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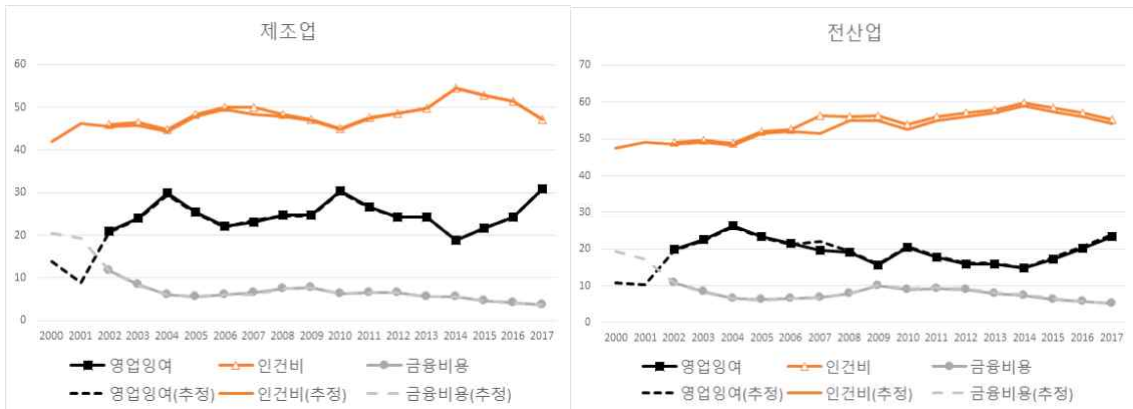
기간은 부가가치 구성항목으로 ‘영업잉여’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2001년 이전 기간에는 ‘영업잉여’가 아니라 ‘경상이익’이 구성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시계열적으로 일관된 구성요소의 비중을 구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은행 ECOS에서 제공하는 산업별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의 기초변수들을 토대로 2000년 이후 기간 ‘영업잉여’ 항목을 비롯한 나머지 부가가치 구성요소들을 직접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2002년 이후 기간에 있어서는 실제치와 추정치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전 산업 법인 부가가치의 구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ECOS에는 2002년 이후에 한해서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세부산업별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나 기간에 따라서 제공되는 세부산업의 범위가 다르므로 단순히 합산하여 구성비를 구하면 시계열적 일관성이 결여된다. 그러므로 2000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제공되는 산업만들을 선택하고 이들의 재무 기초변수들을 합산하여 전산업 시계열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부가가치 구성요소들의 비중을 계산하였다. 합산하여 추정한 전산업의 부가가치는 2017년 기준 실제치의 약 96.5%에 달한다.²¹⁾

<그림6>은 제조업과 전산업에 대해서 기업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별 비중에 대한 추정치와 실제치를 제시하고 있다. 2002년 이후 기간을 보면 실제치와 추정치가 추이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조업과 전 산업 모두 2000-2017년 기간동안 법인기업의 인건비 비중은 등락을 하며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은 2000년 42.1%에서 상승하여 2017년 47.2%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전 산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2000년 47.6%에서 2017년 54.3%로 상승하였음을 볼 수 있다. 부록에 제시된 제조업 이외에 나머지 대분류 주요산업의 구성요소별 비중추이를 살펴봐도 대부분의 산업에서 인건비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인건비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명목노동생산성에 비해서 명목임금이 더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6> 기업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별 비중: 제조업과 전산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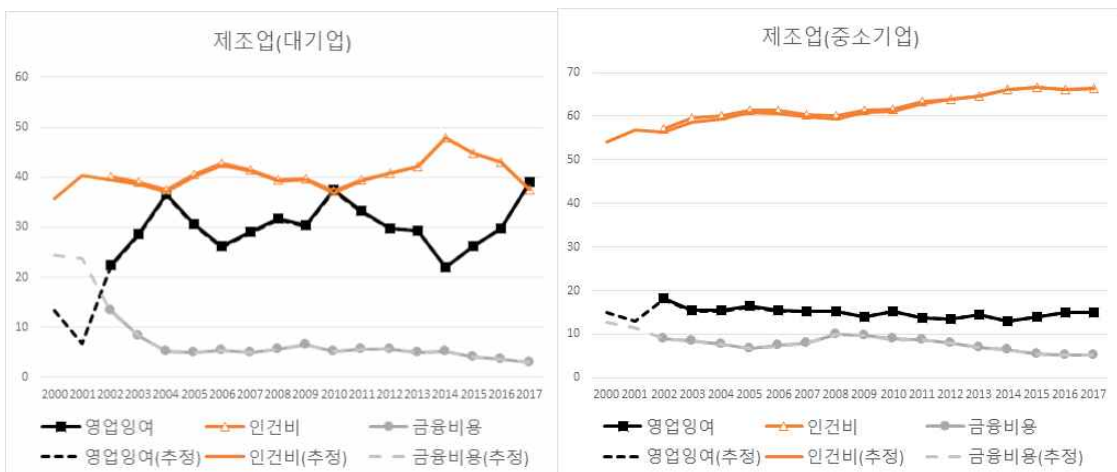
21) 산업 중 시계열상 일관성을 위해 농업(A1), 교육서비스업(P)은 제외하였다. 포함된 산업은 어업(A2),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건설업(F), 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업(I), 통신업(J),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서비스업(N),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이다.



출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기초로 저자계산
 주: 1) 편의상 부가가치 구성요소 중 조세 및 공과, 감가상각비의 비중은 표시하지 않았음.
 2) 추정치는 시계열 일관성을 위해 재무제표 기초변수들을 토대로 계산한 비중이며 2002년 이후 실제치와 유의한 차이가 없음.

<그림7>은 제조업 내 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별 비중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 이후 대기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등락을 하고 있으나 유지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앞서 확인한 전체 기업의 인건비 상승추이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비중상승에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7> 기업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별 비중: 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



출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기초로 저자계산
 주: 편의상 부가가치 구성요소 중 조세 및 공과, 감가상각비의 비중은 표시하지 않았음.

2.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업체 자료 분석

본 절에서는 제조업 사업체 원시자료를 기초로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변화 추이를 비교하여 살펴본다. 사업체에 관한 원시자료는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를 이용하는데 본 자료는 광업 및 제조업 10인 이상 사업체에 관한 전수 자료로서 부가가치 및 임금에 변수들을 제공하는 가장 포괄범위가 넓은 통계자료다. 본 자료는 종사자수, 출하액, 매출액, 부가가치액, 연간급여액 등의 생산 및 비용에 관한 연간 변수를 세부 산업별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본 자료는 사업체(공장)단위자료이므로 기업체단위 자료와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 기업이 제조업 사업체 뿐 아니라 다른 산업의 사업체를 추가로 보유한다면 사업체 단위 자료를 기업체단위로 합산하여도 기업체단위 자료의 일부에 해당하게 된다는 의미다. 또한 한 기업이 두 개의 사업체를 기초로 두 개의 다른 제조 세부산업 품목을 생산한다면 산업단위 합산에서 해당 기업의 성과는 두 개의 다른 산업에 포함되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기업체단위 자료와는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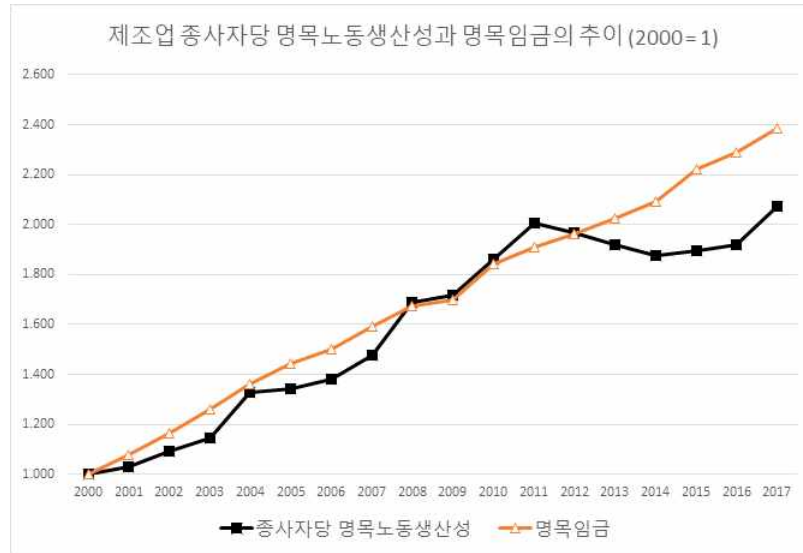
우선 전체 제조업에 대해서 제조업의 부가가치액을 종사자수로 나누어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을 구하고 연간급여액을 종사자수로 나누어 종사자당 명목임금을 구하였다. 두 변수를 명목으로 비교하는 이유는 노동의 부가가치 기여분과 보상분을 같은 금액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함이다. 또한 앞서 III장 2절에서 본 바와 같이 두 변수를 두 개의 다른 물가지수로 실질화를 하는 경우에 물가지수의 차이로 인해서 비교에 심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text{명목노동생산성} = \text{부가가치액} / \text{종사자수} \quad (3)$$

$$\text{명목임금} = \text{연간급여액} / \text{종사자수} \quad (4)$$

<그림8>는 제조업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 각각의 2000년 수치를 1로 삼아 지수화하고 각 지수에 대해서 2017년까지 누적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계산에 따르면 2000-2017년 기간 동안 제조업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은 107.1% (연 4.4%) 증가한 반면 동기간 명목임금은 138.5% (연 5.2%) 증가하였다. 2000-2012년 기간동안 임금은 노동생산성증가에 준하여 증가하였고 그 이후 제조업의 부진에 따라서 노동생산성증가는 정체된 반면 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동생산성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8> 제조업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의 추이 (2000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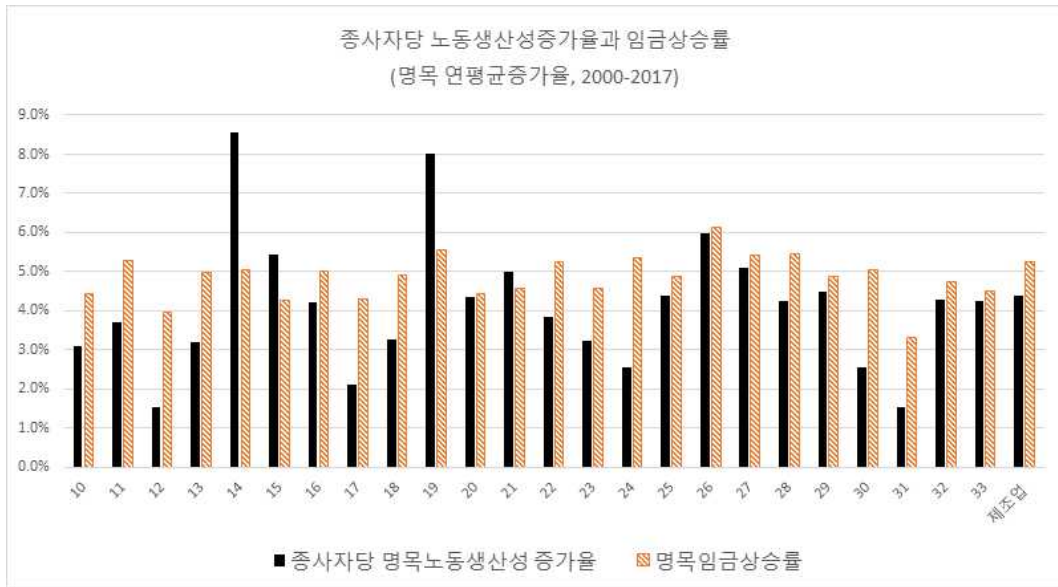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저자계산
 주: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은 명목 부가가치액을 종사자로 나눈 수치고 명목임금은 연간급여를 종사자수로 나눈 것임.

<그림9>은 제조업 세부 24개 중분류 산업에 대해서 2000-2017 기간의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각 산업별 통계치는 부록에 표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00-2017년 기간 동안 24개 중분류 제조업 중 4개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분류 제조업 산업에서 명목임금증가율이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²⁾ 명목임금상승률이 종사자당 명목부가가치증가율을 초과한 20개 산업은 2017년 기준으로 제조업 고용의 94.9% 그리고 부가가치의 91.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9> 종사자당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상승률: 중분류 제조업, 명목 연평균 증가율, 2000-2017

22) 노동생산성증가율보다 임금증가율이 더 낮은 4개 산업은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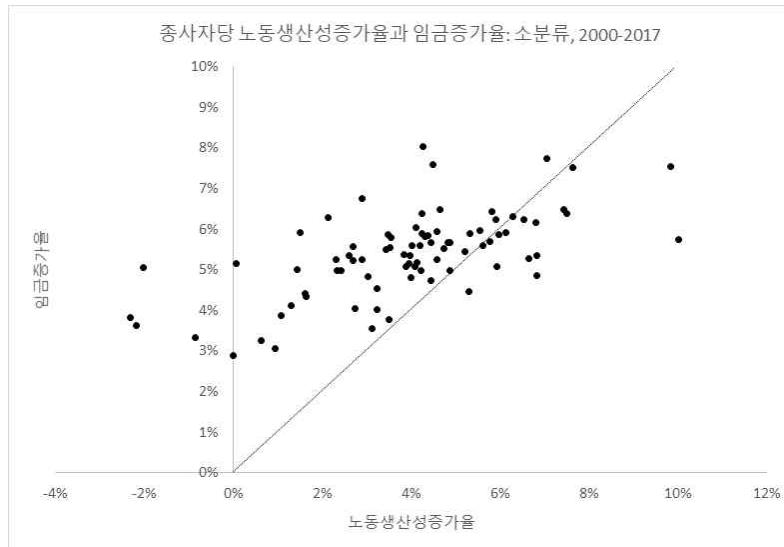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저자계산

주: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은 명목 부가가치액을 종사자수로 나눈 수치고 명목임금은 연간급여를 종사자수로 나눈 것임.

<그림10>은 제조업 세부 83개 소분류 산업의 2000-2017 기간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2000-2017년 기간동안 83개 소분류 제조업 산업 중 66개 산업에서 명목임금증가율이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66개 산업은 2017년 기준으로 제조업 고용의 82.3% 그리고 부가가치의 81.0%를 차지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제조업 세부산업에서는 2000년 이후 명목임금증가율이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증가율을 초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0> 종사자당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상승률: 소분류 제조업, 명목 연평균 증가율, 2000-2017



출처: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저자계산

주: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은 명목 부가가치액을 종사자로 나눈 수치고 명목임금은 연간급여를 종사자수로 나눈 것임.

본 절에서 관찰한 바는 노동생산성과 임금은 장기적으로 유사한 속도로 증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충격에 따라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00-2012년 기간을 보면 평균 증가율은 두 변수가 거의 같았으나 그 이후 수출주력산업의 부진으로 부가가치가 증가하지 않은 반면 고용된 노동은 적게 감소하여 두 변수 간 괴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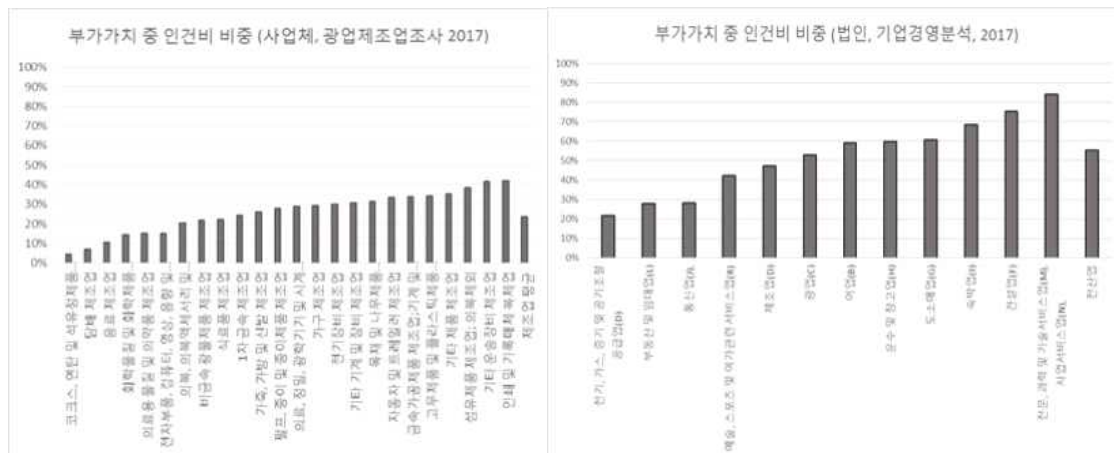
IV. 노동소득분배율 추정상 문제점

전체 경제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 비교를 목적으로 취업자당 GDP증가율과 임금증가율을 비교하는 것은 III장 2절에서 두 지표의 개념적 포괄범위의 차이로 인해 불완전한 비교가 된다는 점은 앞 절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이러한 비교의 대안으로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하 분배율)의 변화를 살펴보기도 한다. 이는 경제가 창출한 부가가치 중에서 노동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비중을 보는 것이고 이 비중이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에 비해 노동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비중이 감소하면 반대의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에서 비중을 구하는 방식은 명목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우선 전체 경제의 총량지표인 노동소득분배율의 수준과 변화추이를 해석하는데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경제를 구성하는 자영업자, 소규모 법인, 대기업, 일반정부 등 매우 다른 특성의 생산구조를 갖은 경제부문들의

각기 다른 분배율들을 가중평균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부의 경우 분배율이 1에 가까울 수밖에 없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분배율 자체가 의미가 없으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분배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업도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에 따라서 분배율 수준과 변화추이가 상당히 다르다. 산업별로도 생산구조에 따라 분배율의 차이는 매우 큰 편이다. <그림11>은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사업체 자료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기업체 자료를 기초로 각각 세부 산업별로 부가가치의 인건비 비중을 측정하는 것이다. 2017년도 기준 제조사업체의 인건비 비중은 세부산업(제조업)에 따라서 5% ~ 42% (평균 24%)으로 추정되며 기업체의 인건비 비중은 산업에 따라서 21%~ 84% (평균 55%)으로 나타나 산업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림11> 산업별 부가가치 중 인건비 비중: 사업체(제조업) 및 기업체, 2017



출처: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저자계산

한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부문 비중이 최근 급속히 감소하는 등 각 부문의 상대적 비중이 유의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부문별 분배율의 가중평균인 노동소득분배율에서 더 나아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자영업부문의 소득을 무리한 가정에 의하여 구분해서 얻은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의 수준과 변화추이를 해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이 된다.²³⁾ 그러므로 단순히 총량지표를 기초로 해석을 내리거나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최

23) 전체 경제가 만약 자영업이나 1인 소유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노동소득분배율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자영업자나 1인 소유 법인사업자의 노동소득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한 분배율의 변화가 각 부문에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파악하고 전체 분배율의 의미와 그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소득의 기능적 분배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특성이 다른 부문별로 분배율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하고 기업부문의 경우는 III장에서와 같이 사업체 또는 기업체 자료를 기초로 분배율 또는 인건비 비중의 변화추이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²⁴⁾ 총량지표는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세부 부문에 대한 분석을 살펴야 비로소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 이처럼 해석상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총량지표가 직관적이라는 이유로 전체경제의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다.

1. 노동소득분배율과 조정노동소득분배율

국내총생산에서 고정자본소모와 생산세 및 수입세를 제외하여 얻은 요소비용국민소득은 피용자보수, 법인의 영업잉여, 가계의 영업잉여 그리고 정부 영업잉여로 구성된다.²⁵⁾ 일반적으로 피용자보수를 노동소득으로 그리고 나머지 부가가치를 자본소득으로 간주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은 요소비용국민소득 중 피용자보수의 비중으로 측정한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노동과 자본투입의 결과인 가계 영업잉여를 온전히 자본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한국경제의 특성상 자영업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 비중이 유의미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표5>에서 볼 수 있듯이 취업자 중 자영업 부문에 종사하는 비임금근로자의 비중(B)은 상당히 크며 1990년 39.5%에서 2018년 25.1%으로 감소하는 등 큰 변화가 진행중이다. 자영업 부문의 영업잉여인 가계 영업잉여가 요소비용국민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히 크며 1990년 25.0%에서 2017년 10.0%로 감소하였다.

<표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구성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고용원이 없는	무급가족 종사자
--	-----------	------------	------	------------	------------	-------------

24) 국민계정상 산업별 노동소득의 비중 역시 산업별 자영업부문의 비중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분배율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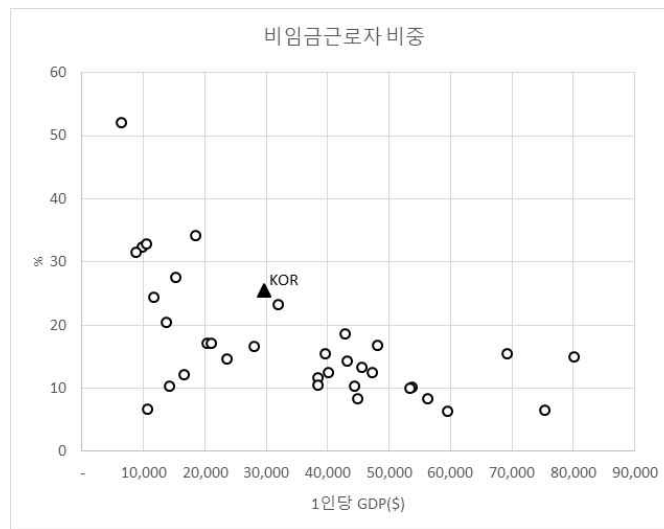
25) 국민계정상 요소비용국민소득의 세부항목에는 각 부문별 재산소득도 포함되어 있다. 기업부문의 재산소득은 음의 값을 갖으며 이는 양의 값을 갖는 가계부문의 재산소득 규모와 거의 일치한다. 이처럼 각 부문별 재산소득은 부문 간 지급과 수취로 대부분 상쇄되며 모든 부문의 재산소득의 합인 전체 경제의 순재산소득은 요소비용국민소득의 1%미만이다. 여기에서는 부가가치가 노동과 자본으로 배분되는 비율을 구하는 것이므로 국민소득 상에서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로 구분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어 재산소득 구분은 하지 않았다.

	A	B (=B1+B2)	B1 (=B11+B12)	자영업자 B11	자영업자 B12	B2
1990	60.5%	39.5%	28.0%	6.5%	21.6%	11.4%
1995	63.2%	36.8%	27.3%	7.4%	19.8%	9.5%
2000	63.1%	36.9%	27.8%	6.9%	20.9%	9.2%
2005	66.5%	33.5%	26.9%	7.3%	19.6%	6.6%
2010	71.2%	28.8%	23.5%	6.3%	17.2%	5.3%
2015	74.1%	25.9%	21.5%	6.1%	15.3%	4.4%
2018	74.9%	25.1%	21.0%	6.2%	14.9%	4.1%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계산

한 국가의 자영업자 고용비중을 결정하는 것으로 거론되는 요소들은 소득 수준, 실업률, 노동시장 유연성 정도, 개인 실효소득세율, 조세제도의 투명성, 사회안전망 수준, 최저임금 수준 등이 있다. <그림12>은 2017년 기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비중과 국가별 소득수준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변수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자영업자 고용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경제발전에 따라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림12> 비임금근로자의 고용비중과 국가별 소득수준: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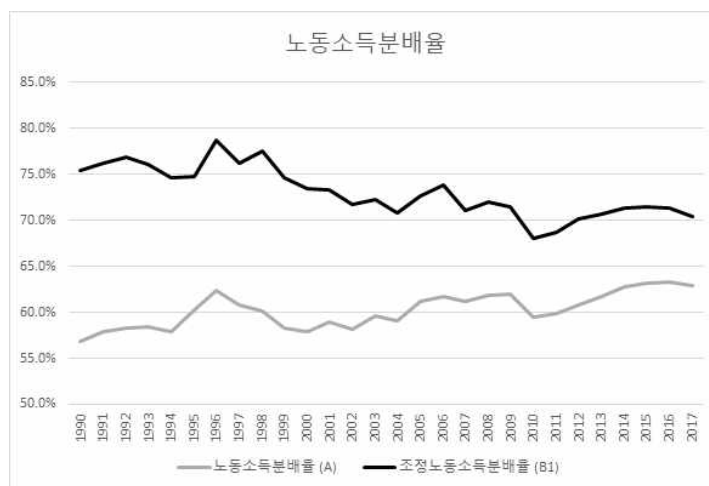


출처: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최근 몇몇 연구에서는 자영업의 영업잉여 중 일부를 노동소득으로 간주하고 영업잉여를 추정노동소득과 추정자본소득으로 배분하는 다양한 가정과

접근법에 따라 배분율을 다시 계산하여 조정된 배분율을 제시한 바 있다.²⁶⁾ 하지만 자영업자의 잠재적 노동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새로 계산한 배분율들이 비현실적인 값을 갖게 되는 등 현실부합적이며 적절한 방식을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배무기(1984), 주상영-전수민(2014), 이병희(2015) 등의 연구에서는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이하 조정분배율)을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영업자 영업잉여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나머지 부문들의 분배율과 동일하다고 간주하고 추정하는 방식이다.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을 도출하는 구체적인 공식은 요소비용국민소득에서 가계부문의 영업잉여를 제외하고 남은 국민소득에서 피용자보수의 비중을 계산하는 것이다. 사실상 자영업 부문을 제외하고 분배율을 계산하고자 하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 <그림13>은 노동소득분배율과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노동소득분배율은 낮고 상승추이를 보이는 반면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높은 편이고 하락추이를 보이고 있어 상당히 다른 사실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된 조정노동소득분배율도 측정방법상 여전히 불완전하며 왜곡을 초래하는 중요한 쟁점들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논의를 다음 세부절에 제시한다.

<그림13> 노동소득분배율과 조정노동소득분배율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저자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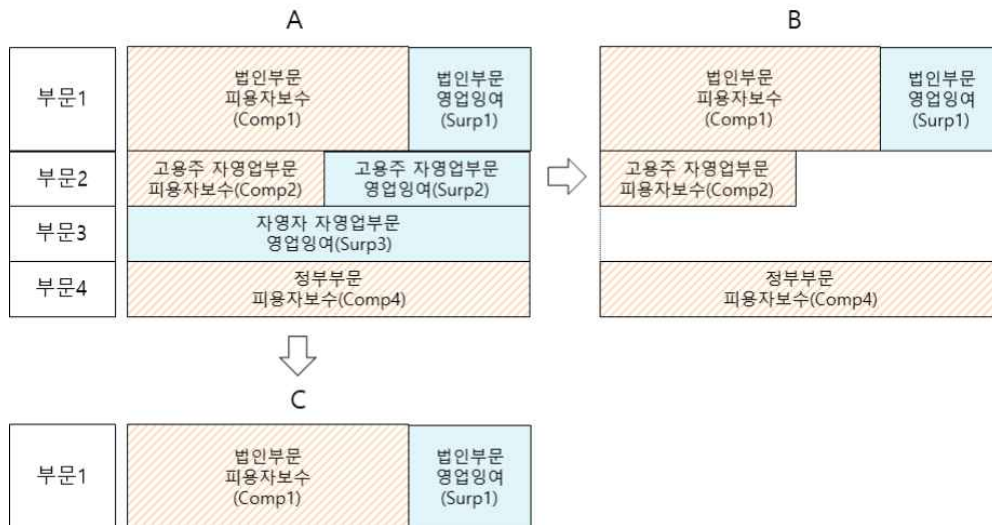
2. 조정노동소득분배율 교정의 필요성: 자영업부문 피용자보수에 대한 고려

첫 번째 문제점은 기존 조정노동소득분배율 도출방식이 자영업부문 피용

26) 이병희(2015)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자보수를 간과하고 있어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림14>의 A는 요소비용국민소득을 법인부문(부문1), 고용원 있는 자영업부문 (부문2, 고용주 자영업), 고용원 없는 자영업부문(부문3, 자영자 자영업), 정부부문(부문3)에서 각각 발생하는 부가가치로 구분하고, 이 부가가치를 다시 해당부문의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 및 조정분배율 측정상 문제점은 자영업부문 (부문2와 부문3)와 정부부문 (부문4)의 분배율 측정이 어렵고 명확하지 않다는데 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감안하여 새로운 조정분배율 방식에 대한 논의를 제시한다.

<그림14> 요소소득 국민소득의 세부구성



<그림14>의 A에서 보듯이 전체 피용자보수에는 법인부문 및 정부부문에서 발생하는 피용자보수(Comp1+Comp4)뿐만 아니라 가계부문에서 발생하는 피용자보수(Comp2)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가계부문 피용자보수(Comp2)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부문에 고용된 고용원의 보수를 의미한다. 2018년 기준에 의하면 전체 취업자 중 21.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중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전체 취업자 중 6.2%)가 29.5%를 차지한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청의 ‘자영업현황분석’에 따르면 2015년 고용원이 있는 등록사업자들은 평균 3.9명의 고용원을 두고 있고 10명 이상인 경우도 36.7%에 달한다. 총 고용원 수가 335.6만명에 달하여 개인사업자 수 대비 70%에 달하는 등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6> 등록사업자 규모 및 고용원 수, 2015 (천명)

사업자	고용원 없는 사업자	고용원 있는 사업자	고용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9 명	10명 이상
4,790	3,928	862	3,356	314	350	328	291	240	601	1,232
			100%	9.4%	10.4%	9.8%	8.7%	7.2%	17.9%	36.7%

출처: 통계청 경제통계국, 자영업현황분석 2016.

노동소득분배율 계산방식은 <그림14>의 A의 구성에서 전체 피용자보수 (=Comp1+Comp2+Comp4)를 전체 부가가치로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그림14>의 B에서와 같이 전체 피용자보수 (=Comp1+Comp2 +Comp4)를 전체 부가가치에서 자영업부문 영업잉여 (Surp2+Surp3)를 제외한 부가가치로 나누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조정하여 조정분배율을 산출할 때 취하는 기본 가정은 자영업부문의 분배율이 나머지 부문의 분배율과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즉, 이 방식의 의도하는 바는 혼합소득의 존재로 인해 분배율 측정이 불분명한 자영업부문 ‘부가가치’의 분배율이 법인부문 ‘부가가치’의 분배율과 같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부문의 분배율(부문2), 그리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부문(부문3)의 분배율이 각각 법인부문(부문1)의 분배율과 같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를 정확히 구현하고자 한다면 <그림14>의 C에서와 같이 자영업부문의 영업잉여(Surp2 + Surp3)만이 아니라 자영업부문(부문2와 부문3)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가가치(Surp2 + Surp3 + Comp2)를 계산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영업부문의 영업잉여뿐만 아니라 이 부문에서 발생하는 피용자보수까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현재 계산방식은 그러하지 않다. 기존 조정분배율 계산방식처럼 자영업부문의 영업잉여만 제외한다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부문(부문2) ‘부가가치’의 분배율이 나머지 부문의 분배율과 달라지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교정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정부부문 피용자보수가 포함되어 있어 시장의 기능적 소득분배 측정을 여전히 왜곡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다음 세부 절에서 기술한다.

자영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그 부문의 피용자보수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 아쉽게도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소득발생에 관한 통계자료는 현재 2010년 이후 기간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다. <표 7>은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소득발생계정 통계를 기초로 부문별 피용자보수의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영업부문의 피용자보수가 총피용자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며 2010년 19.3%에서

2016년 17.5%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을 조정분배율 추정에서 제외시켜야 정확한 추정이 될 것이고 해당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조정은 조정분배율의 증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만약 자영업부문의 피용자보수 비중의 감소추이가 2010년 이전부터 지속되었다면 그 이전 기간의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율을 완화시키거나 증가율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 또한 짐작할 수 있다.

<표7>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피용자 보수: 국민계정 제도부문별 소득발생 계정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정부	가계 (자영업부문)
2010	59.9%	5.3%	15.5%	19.3%
2011	60.9%	5.2%	15.2%	18.6%
2012	61.8%	4.9%	15.2%	18.1%
2013	62.3%	4.7%	15.3%	17.6%
2014	62.3%	4.7%	15.5%	17.5%
2015	62.4%	4.7%	15.4%	17.4%
2016	62.6%	4.6%	15.3%	17.5%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3. 조정노동소득분배율 교정의 필요성: 정부부문 포함 문제

두 번째 문제점은 조정노동소득분배율에서 정부부문과 법인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추계하는 것은 분배율 해석에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 두 부문의 기능적 소득분배율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정부부문은 본질적으로 법인과는 달리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잉여가 매우 적을 수밖에 없으므로 분배율은 1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부문의 소득을 기계적으로 합산하여 분배율을 추정한다면 정부부문의 크기에 따라서 분배율의 수준이 인위적으로 좌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배율 변화추이에도 유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만약 시장에서 발생하는 기능적 소득분배율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자영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정부부문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영업잉여와 피용자보수)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부문의 영업잉여는 매우 적은 수준이

라 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부문에서 발생하는 피용자보수는 앞서 <표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16년 기준 전체 피용자보수의 15.3%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부문에 대한 이슈를 감안하여 재조정된 분배율은 역시 기존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율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점을 후속 절의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조정노동소득분배율 교정의 필요성: 소규모 영리법인 문제

세 번째 문제점은 자영업자와 구분이 불분명한 소규모 법인의 급증이 조정분배율 측정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앞서 <표5>에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평균 고용원수가 3.9명에 달하며 고용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도 36.7%에 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사실상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적은 소규모 법인들은 규모와 경제적 행위에 있어서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소득분류 회계상 법인 영업잉여는 법인부문 영업잉여에 그리고 자영업자 영업잉여는 가계부문 잉여에 각각 달리 포함되어 있다. 만약 자영업부문의 부가가치를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정노동소득분배율 측정에서 자영업부문의 부가가치를 제외한다면 동일한 이유로 소규모 법인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제는 최근 9인 이하 소규모 법인들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왜곡이 유의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표8>은 법인에 대한 전수자료인 통계청 영리법인기업체 행정통계의 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 전체 영리법인의 기업체 수는 42.8만에서 2017년 66.6만으로 급증했는데 그 대부분이 4인 이하 또는 9인 이하 법인 기업체의 증가에 있다. 동기간 4인 이하 법인은 불과 7년 만에 19.2만개에서 40.3만개로 급증하였고 5~9명 법인은 9.9만개에서 12.1만개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법인이 늘고 있는 추이는 자영업자의 감소추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더 나아가 <표9>은 영리법인의 종사자수 규모별 기업체, 매출액 및 영업손익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9인 이하 법인이 전체 영리법인의 영업손익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2.0%에서 8.2%로 증가해서 기업부문 영업잉여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정노동소득분배율 측정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여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8> 영리법인의 종사자수 규모별 기업체, 매출액 및 영업손익

	기업체수 (개)		매출액 (10억원)		영업손익 (10억원)	
	2010	2017	2010	2017	2010	2017
4명 이하	197,352	402,967	147,511	322,293	-319	9,524
5 ~ 9명	99,178	121,935	187,276	314,255	4,241	14,226
10 ~ 49명	106,621	115,516	553,386	749,878	23,829	36,417
50 ~ 299명	21,936	22,563	744,603	904,537	34,759	42,913
300 ~ 999명	2,411	2,408	452,689	537,091	24,143	33,283
1,000명+	517	706	1,514,198	1,931,910	108,849	154,284
전체	428,015	666,095	3,599,662	4,759,963	195,502	290,647

출처: 통계청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표9> 영리법인의 종사자수 규모별 기업체, 매출액 및 영업손익의 분포

	기업체수 (개)		매출액 (10억원)		영업손익(10억원)	
	2010	2017	2010	2017	2010	2017
4명 이하	46.1%	60.5%	4.1%	6.8%	-0.2%	3.3%
5 ~ 9명	23.2%	18.3%	5.2%	6.6%	2.2%	4.9%
10 ~ 49명	24.9%	17.3%	15.4%	15.8%	12.2%	12.5%
50 ~ 299명	5.1%	3.4%	20.7%	19.0%	17.8%	14.8%
300 ~ 999명	0.6%	0.4%	12.6%	11.3%	12.3%	11.5%
1,000명+	0.1%	0.1%	42.1%	40.6%	55.7%	53.1%

출처: 통계청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한편 국민계정에서도 최근에는 추계방식을 개선하여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의 영업잉여를 가계부문이 아니라 법인부문의 영업잉여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큰 규모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人间 구분이 회계상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는 본 연구의 시각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조정분배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세부요소 분류항목이 의미하는 정확한 정보와 회계상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으면 기존 조정방식에 중대한 측정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5.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의 재조정

본 세부 절에서는 앞서 제기한 세 가지 논의사항들을 감안하여 조정분배율을 재조정하여 제시하였다. 식(3)에서 보듯이 노동소득분배율(A)은 요소비용국민소득 중 피용자보수 비중이고 식(4)에서 보듯이 조정노동소득분배율(B)은 분모인 요소비용국민소득 중 가계부문 영업잉여를 제외한 것이어서 결국

비용자보수를 법인부문 영업잉여로 나눈 것과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정분배율(B)의 문제점은 가계부문과 정부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자보수를 제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식(5)에 제시된 신규조정노동소득분배율(C1)은 조정노동소득분배율(B)에 추가로 분자와 분모에서 가계부문 비용자보수를 제외하고 분배율을 계산한 것이다. 더 나아가 식(6)의 신규조정노동소득분배율(C2)은 신규조정노동소득분배율(C1)에 추가로 분자와 분모에서 정부부문 비용자보수를 분배율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다. 결국 신규조정노동소득분배율(C2)은 법인부문만으로 한정된 노동소득분배율로 해석할 수 있다.

$$\text{노동소득분배율(A)} = \text{비용자보수} / \text{요소비용 국민소득} \quad (3)$$

$$\text{조정노동소득분배율(B)} = \text{비용자보수} / (\text{요소비용 국민소득} - \text{가계부문 영업잉여}) \quad (4)$$

$$\text{신규조정노동소득분배율(C1)} = (\text{비용자보수} - \text{가계부문 비용자보수}) / (\text{요소비용 국민소득} - \text{가계부문 영업잉여} - \text{가계부문 비용자보수}) \quad (5)$$

$$\text{신규조정노동소득분배율(C2)} = (\text{비용자보수} - \text{가계부문 및 정부부문 비용자보수}) / (\text{요소비용 국민소득} - \text{가계부문 및 정부부문 영업잉여} - \text{가계 및 정부부문 비용자보수}) \quad (6)$$

<표10>는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발생계정 자료를 기초로 다시 계산한 조정노동소득분배율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기존 조정분배율(B)에 비해 신규조정분배율(C1)과 신규조정분배율(C2)은 다소 낮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한편 2010-2016기간 동안 조정분배율과 신규조정분배율의 변화추이를 비교해 보면 조정분배율(B)은 3.2%p 증가한 반면 신규조정분배율(C1)과 신규조정분배율(C2)은 각각 4.0%p, 그리고 4.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⁷⁾ 이처럼 불과 6년 사이에 조정분배율(B)과 신규조정분배율(C2)의 변화분 측정에 있어서 1.2%p 차이가 난다. 한편 조정분배율(B)이 1990년 75.4%에서 2017년 70.4%로 하락하여 27년 동안 5%p 하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1990~2010년 기간에 자영업부문의 비용자보수비중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따라서 신규조정분배율(C2)을 다시 계산한다면 동기간 변화분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를 추정할 근거자료가 부족하므로 2010년 이전 기간에

27) 추가적으로 소규모 법인의 부가가치를 제외한 조정분배율 추정은 정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가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저자 추정에 의하면 2010~2016년 기간동안 이 경우 재조정 분배율은 5.6%p~6.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해서는 정확한 신규조정분배율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표10> 노동소득분배율과 조정노동소득분배율 추정

	노동소득분배 율(A)	조정노동소득분 배율(B)	신규조정노동소 득분배율(C1)	신규조정노동소 득분배율(C2)
		(가계부문의 영업잉여 제외)	(가계부문의 영업잉여 및 피용자보수 제외)	(가계 및 정부부문의 영업잉여 및 피용자보수 제외)
2010	59.4%	68.1%	63.3%	58.3%
2011	59.9%	68.7%	64.1%	59.3%
2012	60.9%	70.1%	65.8%	61.1%
2013	61.7%	70.7%	66.5%	61.8%
2014	62.8%	71.4%	67.3%	62.6%
2015	63.2%	71.5%	67.5%	62.9%
2016	63.3%	71.3%	67.3%	62.7%
2010-2016	+3.8%p	+3.2%p	+4.0%p	+4.4%p

자료: 한국은행 ECOS 국민계정, 저자계산.

결론적으로 볼 때 노동소득분배율과 이와 관련된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무수한 측정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해석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2010년 이후기간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규조정분배율(C2)이 기존 조정분배율(B)에 존재하는 편의를 상당부분 교정했다고 본다. 하지만 2010년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제도부문별 발생계정 자료가 없으므로 사실상 강한 가정에 의존하여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존 조정분배율(B)은 앞서 제기한 문제점들에서 발생하는 편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기능적 분배에 관심이 있다면 편의와 측정상 문제점이 많은 총량지표의 조정분배율보다는 측정상 문제점이 적은 각 부문별 미시자료를 집계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앞서 제시한 사업체 및 기업체 자료에 근거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본다.

분배율을 보려는 목적이 시장의 기능적 배분을 보려고 한다면 각 부문별 배분을 원시자료에 근거하여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부문별 비중이 변화하고 있고 부문별 분배율 수준과 변화추이가 크게 다른 상황에서 총량지표는 정보로서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국가간 부문별 구조가 이질적인 상황에서 국가간 단순비교로 함의를 찾는 것 또한 위험한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

V. 가계소득 비중감소의 원인 분석

최근 정책당국과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소득 중 가계로 흘러들어가는 소득 즉, ‘가계소득’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국민처분가능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이 1990년 73.5%에서 2017년 65.3%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기업소득의 증가 때문으로 해석한다. 즉, 경제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가계에게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또한 임금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낮았다는 잘못 확인된 사실과 일맥상통하다고 주장한다.

가계소득 비중 감소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가계소득’이라는 개념적 정의를 이해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계정에서는 국민처분가능소득을 회계상 가계소득, 기업소득, 정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간 대립적인 소득분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지분소유를 통해 가계에 있기 때문에 기업소득의 증감은 기업자산의 증감에 영향을 주며 이는 다시 전부 가계자산의 증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국민소득은 가계, 기업, 정부로 배분되지만, 결국 이렇게 배분된 소득은 모두 가계의 소득과 자산의 변화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을 구분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무수한 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지분을 통해서 무수한 수의 가계(외국인 포함) 자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소득 증가를 가계자산불평등의 심화의 원인으로 손쉽게 해석하는 것 또한 위험한 판단이다.

‘가계소득’ 또한 개념적으로 정의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 자영업자와 1인이 100%지분을 소유하는 1인 소유 법인은 상법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이나 경제적 개념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념적 정의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잉여와 재산소득은 ‘가계소득’에 귀속되는 반면 1인 소유 법인의 잉여와 재산소득은 ‘기업소득’에 귀속된다. 앞서 IV장1절의 <그림1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영업자는 저소득국에 보다 일반적인 형태이며 경제발전이 진행되어 고소득국이 됨에 따라서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고 법인 비중이 높아진다. 한국에서는 앞서 <표5>에서 본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자영업형태의 사업자가 급격히 줄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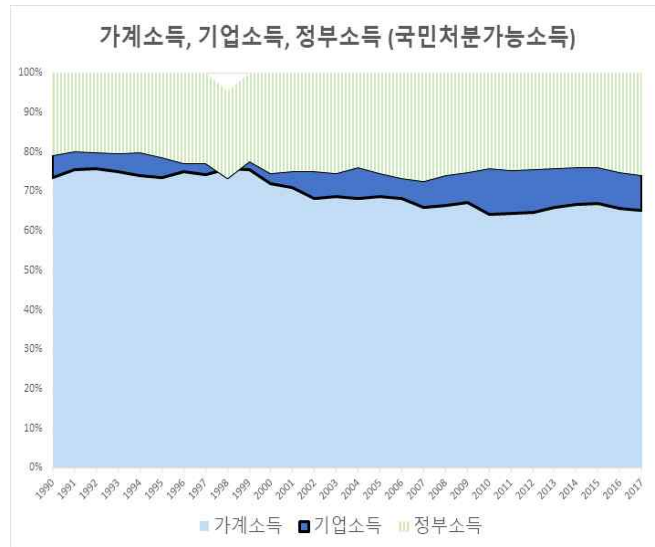
반면 <표8>에서 보듯이 법인형태의 소규모 사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기업형태의 변화추세가 진행된다면 자연스럽게 가계소득 비중이 줄고 기업소득 비중이 늘어가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가계소득 비중과 그 변화에 대한 해석은 그 세부요소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내려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가계소득’ 개념이 해석상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국민계정의 세부자료들을 참조하여 ‘가계소득’ 비중의 변화를 초래한 주요 요인들을 확인해 보았다. 특히 노동생산성증가율에 비해 임금증가율이 낮지 않았다는 앞 절의 분석결과들과 가계소득 비중 감소현상이 어떻게 병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가계소득 비중 감소의 원인1: 정부부문 확대

우선 국민처분가능소득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계소득 비중 감소의 일차적인 원인은 정부부문의 확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5>은 1990년 이후 국민처분가능소득의 구성 변화의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처분가능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이 1990년 73.5%에서 2017년 65.3%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동일 기간 중 정부소득 비중은 20.7%에서 25.9%로 크게 증가한 점을 볼 수 있다. 기업소득의 변동성에 따라서 연도별 비중의 변동이 크게 변하는 걸 감안하여 10년단위로 평균하여 1990년대와 2010년대를 비교하여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 가계소득 비중이 1990년대에 75.1%에서 2010년대에 65.5%로 줄어든 반면 정부소득 비중은 동기간 21.3%에서 24.4% 증가했다.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정부부문이 확대되는 것은 발전과정에서도 일반적이고 정부부문 확대가 가계소득 비중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같은 기간 기업소득 비중이 상승하여 가계소득 비중 감소와 대비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 세부 절에서 제시한다.

<그림15> 국민처분가능소득의 경제주체별 구성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저자계산

<표11> 국민처분가능소득의 경제주체별 구성

	가계소득 비중(국민처분가능소득)	기업소득	정부소득
1990	73.5%	5.9%	20.7%
1995	73.4%	5.4%	21.2%
2000	72.0%	2.7%	25.2%
2005	68.6%	6.1%	25.3%
2010	64.2%	11.7%	24.1%
2015	67.0%	9.3%	23.8%
2017	65.3%	8.9%	25.9%
1990-1999	75.1%	3.6%	21.3%
2000-2009	68.4%	6.2%	25.3%
2010-2017	65.5%	10.2%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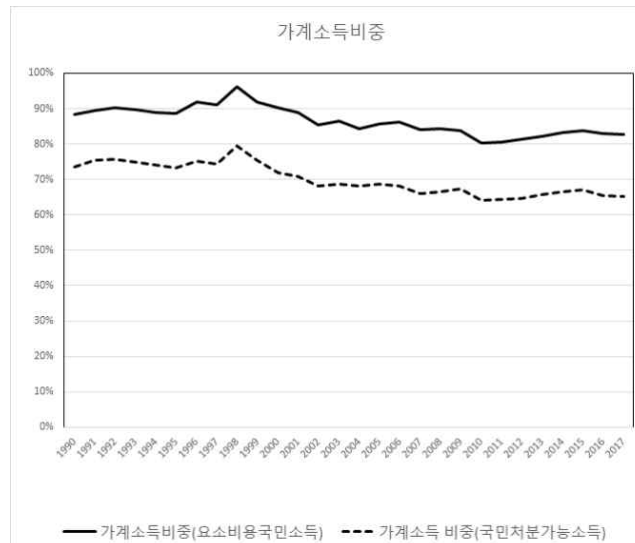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저자계산

2. 가계소득 비중 감소의 원인2: 자영업자 감소

가계소득 비중 변화의 세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세부 구성요소별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부문간 경상이전이 이미 반영된 국민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서는 가계소득을 세부 구성요소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편 부문간 경상이전이 반영되기 전 국민소득 개념인 요소비용국민소득 기준에서는 각 부문의 세부구성요소가 구분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²⁸⁾ 요소비용국민소득은 국민소득이 일차적으로 각 부문별 생산요소에게 어떻게 배분되는지 보여준다. 요소비용국민소득 중 가계부문에 해당되는 구성요소는 피용자보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 그리고 재산소득이 있다. 기업부문에는 법인 영업잉여와 재산소득으로 그리고 정부부문에는 일반정부 영업잉여 및 재산소득이 해당된다.²⁹⁾ 1990-2017년 기간에 대하여 요소비용국민소득 기준의 가계부문 소득비중과 국민처분가능소득 기준의 가계소득 비중을 비교하여 제시한 <그림16>을 보면 두 비중의 추이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요소비용국민소득 기준 가계부문의 소득을 세부요소로 구분하여 그 요소들의 변화를 파악하면 국민처분가능소득 기준 가계소득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6> 가계소득비중: 요소비용국민소득 기준과 국민처분가능소득 기준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저자계산

<그림17>은 요소비용 국민소득의 세부구성요소들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표12>는 요소비용국민소득 기준으로 가계부문, 기업부문 및 정부부문 각각에 해당하는 소득의 요소별 비중들을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다. 가계소득의 구성요소 중 특히 자영업부문 영업잉여에 해당하는 가계 영업잉여의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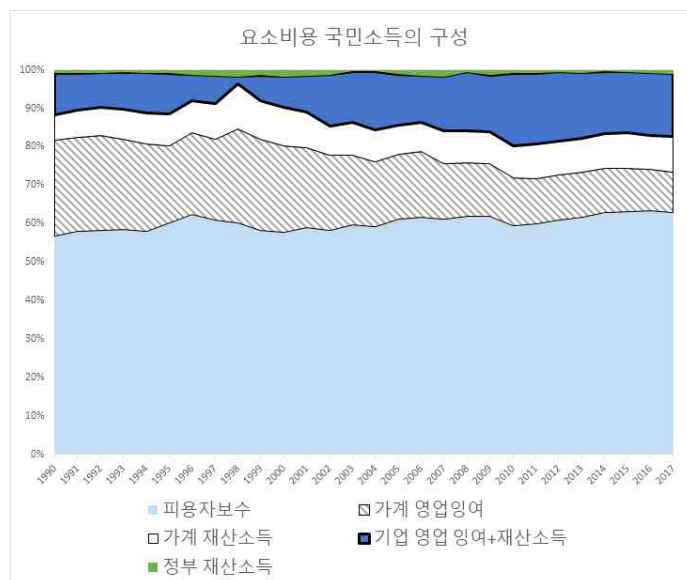
28) 국민총소득(GNI)에서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을 더하고 고정자본소모를 제한 것이 국민처분가능소득(NDI)이다. 여기서 다시 국외순수취경상이전과 생산 및 수입세(공제) 보조금을 제한 부분이 요소비용국민소득(NI)이다. 2017년 기준 요소비용국민소득은 국민처분가능소득의 87.5% 수준이며 두 변수의 시계열적 변화추이는 큰 차이가 없다.

29) 여기서 기업의 재산소득은 기업이 지급하는 이자 및 배당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음의 값을 갖는다. 가계부문의 소득 중 재산소득은 대부분 기업이 배분하는 이자와 배당금에 해당하므로 기업 재산소득의 절대값과 유사한 값을 갖는다.

중이 상당히 크고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계부문 총소득(A)를 구성하는 세부항목들의 각 비중변화를 살펴보면 1990~2017년 기간 중 피용자보수비중(A1)은 56.8%에서 63.0%로, 가계재산소득비중(A3)는 6.5%에서 9.2%로 각각 증가하였다. 반면 자영업부문 영업잉여는 25.0%에서 10.4%로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업부문 소득은 동기간 10.8%에서 16.4%로 증가했다. 각 비중이 연도별 변동이 큰 편이라 이를 10년 단위로 평균하여 1990년대와 2010년대를 비교하여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

여기서 확인한 사실은 첫째, 가계부문의 총소득이 감소한 이유는 피용자보수가 줄어든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의 영업잉여가 급격히 감소한데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발전이 진행되면서 생산의 주체가 자영업형태의 개인사업자에서 기업형태의 법인사업자들로 대체되어 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이는 1990-2018년 기간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39.5%에서 25.1%로 감소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요소비용국민소득 구성에서 기업부문 소득과 피용자보수 비중은 모두 증가 추이에 있다. 기업부문 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가 피용자보수 비중이 감소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 비중이 급속히 하락한데 있다.

<그림17> 요소비용 국민소득 구성의 추이 : 1990-2017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저자계산

<표12> 요소비용 국민소득의 경제부문별 구성: 1990-2017

	가계부문			기업부문	정부부문	
	가계부문 총소득 (요소비용 국민소득) A	비용자 보수 A1	가계 영업잉여 A2	가계 재산소득 A3	기업 영업 잉여 및 재산소득 B	정부 재산소득 C
1990	88.3%	56.8%	25.0%	6.5%	10.8%	1.0%
1995	88.6%	60.2%	20.1%	8.3%	10.5%	1.0%
2000	90.3%	57.8%	22.4%	10.0%	8.0%	1.8%
2005	85.6%	61.2%	16.9%	7.5%	13.2%	1.2%
2010	80.3%	59.4%	12.4%	8.4%	18.7%	1.0%
2015	83.7%	63.2%	11.1%	9.4%	15.8%	0.5%
2017	82.6%	63.0%	10.4%	9.2%	16.4%	1.0%
1990-1999	90.6%	59.1%	23.1%	8.4%	8.3%	1.1%
2000-2009	85.9%	60.2%	17.3%	8.4%	12.9%	1.2%
2010-2017	82.1%	61.8%	11.4%	8.9%	17.1%	0.7%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저자계산

3. 소결

결론적으로 최근 언론이나 몇몇 문헌에서 우려해 온 가계소득 비중감소 현상의 진정한 원인은 기업에서 노동소득으로 배분되는 비율이 감소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문 비중의 확대와 자영업자들이 법인으로 대체되는 현상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가계소득’이라는 명칭이 주는 개념적 혼동에 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가계소득’ 개념에는 자영업자소득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영업자와 소규모 법인 간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는 공통적 특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최근 4인 이하 법인기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소득은 자영업 소득과는 달리 ‘기업소득’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등 법적형태에 따른 인위적인 구분으로 인해 착시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가계소득’에서 자영업자소득을 제외해야 한다. 가계소득의 비중은 비용자보수(A1)과 가계부문의 재산소득(A3) 중 비자영업 부분으로 국한해야 한다. 다만, 현재 통계자료에서는 재산소득 중 자영업부문 소득과 가계부문 소득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측정은 어렵다.

VI. 결론과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사업체 및 기업체 원시자료와 국민계정자료를 분석하여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기존 문헌들의 주장과는 달리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증가율보다 낮지 않았고 오히려 사업체 및 기업체 원시자료에서는 임금상승률이 더 높아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기존 국내외문헌들이 취업자당 실질GDP와 실질임금을 비교할 때 실질화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아 임금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해석상의 오류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가계소득비중 감소의 주된 원인은 기업소득의 증가보다는 정부부문의 확대와 자영업자비중의 감소에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측정상 여러 쟁점이 남아 있어 장기시계열 추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보면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간의 사실관계가 기존 문헌에서 주장하는 바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미시 및 거시 실증자료를 기초로 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만약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증가율보다 낮았다는 ‘임금 없는 성장’ 이라는 잘못된 인식된 사실에 근거하여 취해진 정책이 있다면 정책전환과 시정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은 자본생산성보다 더 큰 부분을 가져가고 있어 여유가 있으므로 임금상승을 유도하는 정책이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또한 잘못된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지나친 임금인상은 노동생산성 증가분 이상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미 부진한 기업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미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따른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임금증가가 낮은 원인은 기업에게 소득이 더 많이 배분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노동생산성 증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 및 제도개혁을 통해 혁신과 투자촉진을 유도하여 창의기반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열어주고 낮은 노동생산성 산업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높은 노동생산성,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시키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노동소득분배율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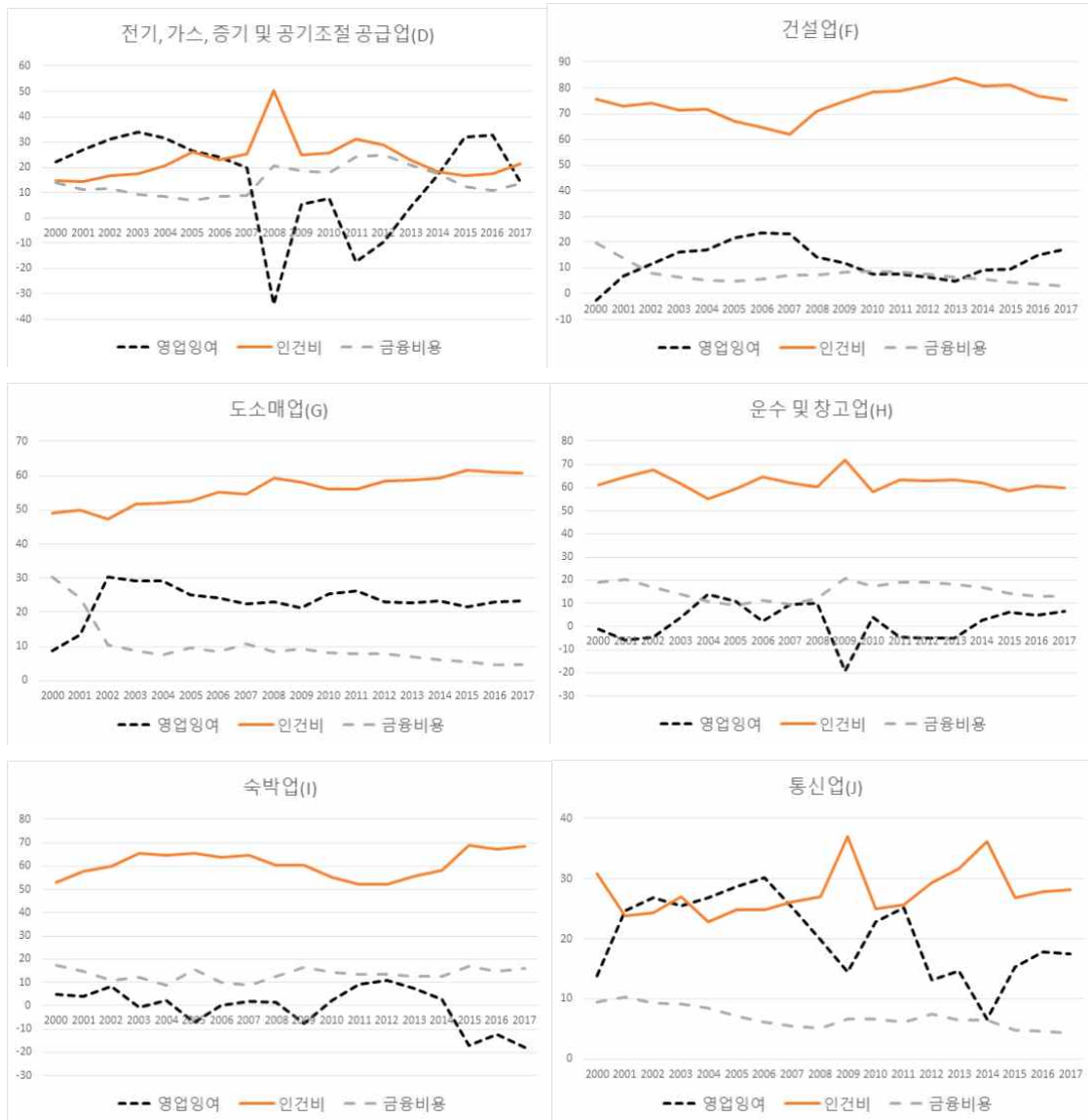
이를 통해 노동의 산출탄력성을 추정하고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노동의 산출탄력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과 부문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생산구조가 유사한 산업과 부문을 구분하여 부문별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전체경제에 대한 총량지표로서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그 유용성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통해 노동소득에 대한 시장의 기능적 분배를 살펴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분배율을 측정하고 관찰하는 것은 나름대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나 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소득분배율이 갖는 본질적인 정보적 한계와 측정상의 여러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경제전체에 대한 노동소득분배율 또는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을 기초로 단순한 해석을 내리거나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 특히 비중이 상당한 정부부문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부문의 경우 기능적 분배가 사실상 의미가 없으므로 이를 포함시키는 경우 시장의 기능적 분배를 보려고 하는 원래의 목적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 분배율 측정에 필요한 자료가 불충분한 고용원 있는 자영업부문을 제외하면 법인부문만 남는데 법인부문에 대한 분배율은 국민계정이 아니라 사업체 또는 기업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신뢰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역시 총량지표인 노동소득분배율을 기초로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것 또한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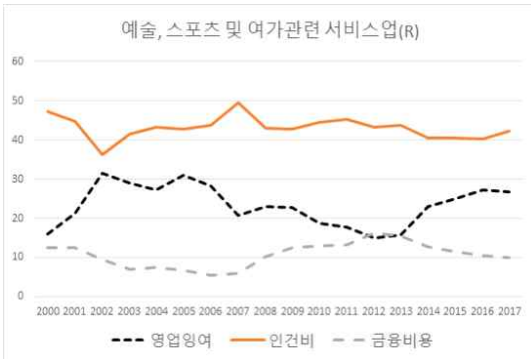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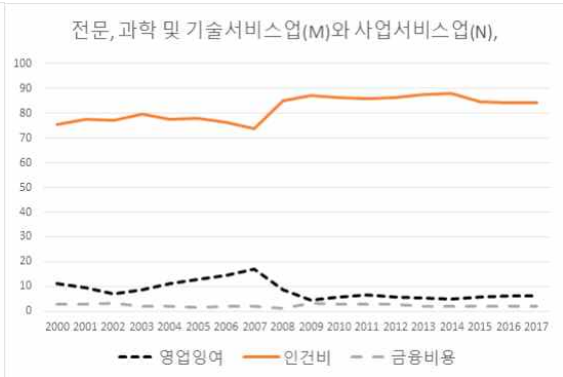
<참고문헌>

- 김유선, 『한국의 노동 201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
- 남성일,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적정임금: 투자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1991. 9.
- 박종규,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KIF 연구보고서 2013-08, 한국금융연구원, 2013.
- 박종규, “임금없는 성장의 국제비교” 금융포커스 23-16, 한국금융연구원, 2014.
- 배무기,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분배율 추계”, 『경제논집』 23(4), 1984, pp.389~418.
- 이병희,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쟁점과 추이”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5, pp.25~42.
- 장하성, 『왜 분노해야 하는가: 한국 자본주의 II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 헤이복스, 2015.
- 주상영·전수민,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 한국에 적합한 대안의 모색”, 『사회경제평론』 43, 2014, pp.31~65
- 통계청, 『자영업 현황분석』, 경제통계국 경제통계기획과 보도자료 2016.12.26.
- 한국생산성본부, 『기업규모별 업종별 노동생산성 분석』, 생산성연구소 2013.
- 홍장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클러스터”, 민주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 발표 2015
- Bosworth, B., Perry, G. L., Shapiro, M. D. “Productivity and Real Wages: Is There a Puzzl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94(1), 1994, 317-344
- Dabla-Norris, E., Kochhar, K., Suphaphiphat, N., Ricka, F., Tsountaet E.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 *IMF Staff Discussion Note SDN 15/13*, June 2015.
- ILO, *Asia-Pacific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2018*, 2018.
- Park, K. S., “Industrial Relations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Pacific Economic Review* 12(5), 2007, pp.711-723

부록

<그림A1> 기업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별 비중: 대분류 세부산업





<표A1> 종사자당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상승률: 명목 연평균 증가율, 2000-2017

산업 코드	산업명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	명목임금 상승률
10	식품제조업	3.1%	4.4%
11	음료제조업	3.7%	5.3%
12	담배제조업	1.6%	4.0%
13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3.2%	5.0%
14	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8.5%	5.0%
15	가죽,가방및신발제조업	5.4%	4.3%
16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	4.2%	5.0%
17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2.1%	4.3%
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3.3%	4.9%
19	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8.0%	5.6%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4.4%	4.4%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5.0%	4.6%
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3.8%	5.3%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2%	4.6%
24	1차금속제조업	2.5%	5.4%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4.4%	4.9%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6.0%	6.1%
27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5.1%	5.4%
28	전기장비제조업	4.2%	5.5%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4.5%	4.9%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2.6%	5.1%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5%	3.3%
32	가구제조업	4.3%	4.8%
33	기타제품제조업	4.3%	4.5%
	제조업	4.4%	5.2%